

## ② 의료진에 의한 성폭력

산부인과,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한의원 진료시, 물리치료, 지압, 기타 불법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피해가 보고 되고 있다. 의료전문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맡긴 상태에서의 피해는 환자에게 큰 당혹감과 분노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의료전문가가 전문적 치료행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의료진에 의한 성폭력 2차 피해는 바로 이 입증의 어려움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할 때 가해자는 강력히 부인하고 치료 행위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전문성을 가지고 방어를 한다.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하는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중의 피해는 의학적인 전문성과 법률적인 전문성이 겸비한 전담수사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투자와 양성이 필요하다.

<사례 3-30> 교통사고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40대 환자가 물리치료실에서 강간피해를 당하였다. 이후 가해자의 사실 시인과 배상 약속까지 받았으나, 경찰·검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기혼여성이며, 교통사고 환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고소의 의도를 의심받았다. 밖에 다른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 후 즉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한참 지나서 고소했다는 점,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판결이 났다.

<사례 3-31> 가슴 성형수술을 받고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후속치료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진료가 끝난 후 고소하자 돈을 돌려내려 한다며 진료행위였음을 주장하였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사례 3-32> 복통으로 진료 받으러 간 환자에게 성추행한 의사를 고소하였으나, 상식적으로 간호사와 환자가 밖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추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며 무죄 판결이 났다.

<사례 3-33>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하였다. 가해자와 병원에 항의하고, 바로 경찰서에 병원 원장과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담당형사가 병원 측은 고소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하여, 병원 측은 빼고 고소장을 재작성하였다. 경찰에서 피해자를 피고소인 취급하고 정신병자로 몰고 갔고,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되었다.

<사례 3-34> 어깨가 아파서 아는 침술원에 갔는데, 내진을 한다고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동일 침술원에서 치료받은 율케, 사촌에게 전화를 해보니 동일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침술원에 따지러 갔다. 침술원에서는 그런 일도 없는데 짜고 협박한다며 경찰에 고소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성추행으로 맞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인척관계가 아닌 제3의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사실을 인정하겠다고 하여 다른 피해자를 수소문해서 찾았지만, 이 일에 끼고 싶지 않다며 합의서만 쓰고 갔다.

## (3) 기타 특수 관계에서의 성폭력

본 연구 대상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사례 분석에 의하면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35% 이다.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 중에는 아래의 <표 17>에서 보듯이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성폭력, 동성 성폭력 순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표 17>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장애인	3	3.6	4	4.2
동성	2	2.4	3	3.1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외	79	94.0	89	92.7
계	84	100	96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1)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서울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2002년도 상담 현황에 의하면, 피해 여성 장애인의 직업은 무직이 51.7%로 제일 높으며, 이는 열악한 조건의 여성 장애인으로 직업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은 더욱 열악한 조건이며 상담을 해올 수도 없는 처지에 있을 수 있다. 피해자의 나이를 보면 성인이 62.1%로 나타나는데 미혼이 87.4%로 많은 것을 보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결혼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정신지체, 뇌병변, 정신장애, 정신지체, 청각언어, 중복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로 나누어진다.<표 18>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유형을 보면, 강간이 83.9%인데 이는 장애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이웃, 모르는 사람, 근친, 교사, 강사, 동급생 선후배, 기타, 자원봉사, 직장, 목사 성직자, 친인척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 유형에서 모르는 사람이 가장 높고,

청각 언어의 유형에서 동급생·선후배, 근친이 비교적 높고, 지체 장애 유형에서 자원 봉사자와 교사·강사, 직장,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

<단위 : 건>

상담소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정신	중복 장애	계
서울	6	8	3	6	48	1	7	5	84
	7.1%	9.5%	3.6%	7.1%	57.1%	1.2%	8.3%	6.0%	100.0%

출처 : <2002년도 상담현황>, 서울장애인성폭력상담소

피해 발생장소는 피해자의 집, 여러 장소의 시설이나 학교, 야외, 가해자의 집, 숙박업소, 모르는 장소, 직장, 기타의 순이었다. 피해 발생 장소로 집이 일순위인 것은 정신지체 피해자가 혼자서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하는 성폭행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해 방법을 보면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이 48.3%, 그리고 강제력 사용이 42.5%, 과자나 돈으로 유인한 것이 4.6%로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여성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른 취약성을 악용하여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 수는 1명이 81.5%, 2명이 1.2%, 3명 이상이 1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 3명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지속 피해의 비율과 함께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속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가 55.2%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이상도 13.8%나 차지한다. 지속회수 1회가 18.4%, 2회에서 10회가 12.6%를 차지했다. 미혼의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기혼인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가 그 지속성으로 인해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최초의 내담자는 관련 단체가 34.5%, 동료·이웃·교사가 27.6%, 보호자가 27.6%, 본인이 9.2%로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해오는 사례는 9.2%에 불과하며 나머지 90%이상의 피해가 주변에 인지되어야 상담을 의뢰해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드러난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는 드러나지 않는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경우 결혼 전에 같은 동네의 가해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다가 이웃 동네 사람과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전의 가해자가 결혼 후까지 찾아가 성폭행을 한 예가 있는가 하면, 1급의 70대 정신지체 할머니가 같은 마을의 60대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등 특정한 장애 유형에 따라 나이와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정도가 다른 형식의 성폭력이 나타나기도 한다<sup>36)</sup>.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보면, 피해자는 우선 정신적 후유증으로 심한 분노나 불면·불안·우울·무기력 등을 동반하며 대부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신체적으로는, 질의 심한 손상이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입고, 임신과 관련된 낙태 및 출산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한다. 성적 후유증으로 과잉 성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남성에 대한 부정적 성인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적 후유증으로는 대인관계 회피, 불특정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고 직장에서는 피해자이면서도 해고를 당하며, 사회적 편견과 여성장애인의 조건(학력이나, 장애 유형의 정도)에 의하여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형사사법 절차상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우선 피해자가 장애의 특성상 거부와 저항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것이 동의로 해석되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피해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피해경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비친고죄인데도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가 무혐의

36) 장명숙, 「여성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에서 바라본 성폭력특별법」,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년 인권위원회 집담회 회의자료, 2003.

처리되곤 한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진단과 평가도 필수적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 장애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사 표현이 힘든 장애인의 경우는 전문가가 진술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동석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처들은 장애인 피해자의 2차 피해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례 3-35> 이웃집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주부가 청각, 언어장애를 갖고 있었다. 동생이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통역자가 교섭되지 않아 수사진행이 지연되었다.

<사례 3-36> 정신질환을 가진 20대 여성이 동네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정신분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의사가 간헐적으로 증세가 나타난다고 증언하여 무혐의로 불기소되었다.

<사례 3-37> 신체장애가 있는 14세 소녀를 4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전과 4범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이 “열쇠를 주고 나갔는데 도망을 가지 않았고, 몇 년 전에도 성피해로 고소한 경력이 있다”고 하며 불리하다고 말하였다.

<사례 3-38> 정신지체 여성이 옆방 남자에게 강간당한 후, 칼로 협박당하며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된 뒤 바로 가해자의 친구 3명에게 또 윤간 피해를 당했다. 검찰 진술과정에서 피해자가 횡설수설한다고 검찰관계자들이 야단치며 압박질렀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이웃 사람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할 쉼터나 보호소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성폭력 전담 수사반이 따로 설치되면 이상적이겠지만 우선은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찰 조사, 법정 재판의 진행과정에 필수적으로 관련 담당자들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의료지원·경찰연계가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2) 동성에 의한 성폭력<sup>37)</sup>

대부분의 성폭력은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남성이 남성을 성폭력 하는 경우도 적은 비율이지만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의하면 남성 피해 고소 건수는 전체 피해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데(<표 12> 참고), 이중 미성년자인 남아의 피해는 69건, 42건, 78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현황에서는 연간 100건 내지 120건 정도가 상담 의뢰되고 있는데 이중 80% 이상이 미성년자이다. 13세 미만의 남아 피해는 형법,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비 친고죄로 처벌되며, 남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로 처벌된다(1년 이상 유기징역,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전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대(對)여성범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강간의 개념 규정이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의 피해에서 만지기, 빨기, 항문 성교, 2인 이상의 유사 성교 등의 심각한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규정된다. 아직도 남성 피해는 그 심각성이 공론화되지 않아서 묻혀지는 경우가 많다. 남성도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가해자를 적극 처벌해야 한다는 예방교육이 부족하고,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하고 보호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있는

37) 동성에 의한 성폭력은 남성에 의한 남성 성폭력, 여성에 의한 여성 성폭력을 포함하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간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의 사례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해둔다.

실정이다.

남성들은 비교적 성에 개방되어 있어 경미한 접촉은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남성다움을 강조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강요나 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남성성에 타격을 준다. 피해자는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면화시켜 성격 형성이나 대인관계, 이성관계, 결혼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다. 성병 감염, 에이즈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심하며 이에 대처할 비뇨기과 항문외과, 감염내과 등 활용할 의료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

성폭력이 약자에 대한 폭력 범죄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남성 피해의 경우 연령, 완력, 지위의 차이에 따른 위계가 폭행과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군대나 감옥 등 엄격한 상명하복의 구조는 성폭력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사례 3-39, 40). 군대나 감옥에서는 피해를 드러낼 창구가 부족하고 보복,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사후 처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

<사례 3-39> 군대 상사에게 항문성교 당한 27세 청년이 5년 전의 피해 후유증으로 몸에서 계속 썩는 냄새가 난다고 병원을 전전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례 3-40> 군대에 설법을 하러 오는 승려가 신도인 군인을 추행하여 군부대에 고소하였으나 종교 행사 주재자만 교체되고 무마되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폭력과 병행하여 구타, 금품갈취, 성적인 수치감과 모욕을 당하는 추행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사례 3-41~43).

<사례 3-41> 동성애에 대한 선망을 가진 동년배가 완력과 위협으로 동성애를 강요하였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례 3-42> 학교에 침입한 청년으로부터 학교 외진 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아버지가 인지하고 바로 학교에 조치하도록 경고했으나 학교에서는 신고를 만류하였다.

<사례 3-43> 가출하여 술집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술집 주인이나 폭력배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였다.

남자 아동의 경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유인이나 장난으로 위장한, 또는 끌려가서 고령의 어른이나 선배의 술수에 의해서 산 속, 공중화장실, 극장, 빈 집, 가해자 집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사례 3-44, 45, 51). 다수의 동년배에 의해서 힘이 약하고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추행을 당하는 사례(사례 3-46), 사회적 위계 관계를 이용한 사례(사례 3-47, 48)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친분관계를 이용한 성폭행 사례도 관찰된다(사례 3-49, 50).

남아 피해에 대해 무지한 부모는 피해를 인지했을 경우, 별것 아닌 것으로 무시하거나 엄청난 충격과 경악으로 적절한 대처를 해주지 못한다. 그 결과 피해 남아들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성적 자극에 노출되어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성적 방종, 가해 행위, 성적 도착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피해 남아와 보호자는 성병과 에이즈 감염,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 등 후유증을 보이기도 한다.

남성 성폭력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남성 피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성 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난받는 피해자가 된다. 이와 같이 고소해도 가해자에게 온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비난받게 되는 남성 피해자의 경험은 2차 피해로 인식된다.

<사례 3-44> 학교 앞 문방구 할아버지가 남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여 양호

교사가 인지하여 부모들에게 알려 고소하였다. 1심에서 가해자가 고령이고 초범이고, 피해자가 남아라는 이유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벌금형만이 선고되었다.

<사례 3-45> 중학교 2학년인 남아가 모르는 아저씨로부터 빈집으로 끌려가 항문 성교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만난 공원, 빈집 등을 찾아다녔지만 가해자를 잡지 못했다.

<사례 3-46> 초등학교 1학년인 남아가 동네 청소년에게 성추행을 당하여 항문 출혈이 되었다. 비뇨기과 치료 후 고소했으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초범이고 학생이라고 훈방되었다.

<사례 3-47> 출장 중 평소에 아끼던 후배로부터 숙소에서 성추행 접근을 받아 화를 내고 밀쳤으나 재차 음란한 말을 하며 접근하여 한 대 쳤다. 후배의 눈 밑의 뼈에 금이 가 6주 진단이 나오고 수술을 하게 되었다. 성추행을 방어한 피해자를 후배가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하고 이천만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구속되었다. 천만원으로 합의하고 풀려났으나 약식기소로 벌금형 이백만 원이 나왔다. 알고 보니 다른 동료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접근했다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범 발생을 방지하고자 고소하려고 했지만 추행의 증거가 미비하다고 하였다.

<사례 3-48> 외국 국적을 가진 사장이 출장을 때마다 동성 성교를 강요하였다. 참다못해 고소했으나 경찰에서는 “성인남성이 싫으면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여 성기를 뺀 정액을 모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후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사직하였다.

<사례 3-49> 고시준비를 하러 절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은 주지가 밤에 들어와 성추행하였다. 고소하자 호법부와 관할 경찰이 합의를 강요하여 취하했으나 이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례 3-50> 형, 동생으로 부르며 지내는 사람이 항문 성교를 하여 고소하였으

나 “성인 남성이 강력히 저항할 힘이 있는데 당했느냐”며 강제로 당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전의 돈 거래로 인한 양심으로 몰아갔다.

<사례 3-51> 수영장에서 놀던 12세 남아를 60대 남자가 성추행하는 것을 수영장 코치가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가해자 직업이 학교 교사라 합의를 졸랐어도 아동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어서 처벌을 원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사재판과정에서 경찰이나 가해자 변호인이 계속 합의금을 올리려고 한다는 비난을 하여 울분을 토했다.

<사례 3-52> 중학교 1학년 남아가 동네 광패 2명으로부터 산으로 끌려가 향문성교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가해자들은 강제 추행으로 처벌되었다.

남아피해도 어린이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주므로 범죄임을 확실히 하고 마땅한 징계와 사후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5세의 차이를 권력관계로 보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남성피해를 유사 성교행위로 간주,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 남성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남성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3)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외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인 가해자는 가해자의 특성상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거의 어렵다. 신원 미상의 가해자는 검거의 어려움으로 처벌이 역시 어렵다.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자인 14세 이상인 자와 형사미성년자인 13세 이하인 자(소년법의 보호처분만의 대상인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 그 이하의 미성년)로 구분된다. 12~13세의 가해자는 소년법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처리되며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선도보호를 받고 처벌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12

세 미만의 가해자는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다. 정신 지체자나 정신 질환자 역시 판단 능력과 통제력이 없어 법적 처벌 대상자가 안 된다. 노인 가해자인 경우는 고령이고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거의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며 가해자 가족의 합의 중용으로 많은 경우 합의에 이른다.

처벌의 불가능이나 어려움이 이들에 의한 성폭력이 가볍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심각함과 반(反) 사회적 영향은 형사처벌 가능자의 성폭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미성년 청소년 가해자의 성폭력은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남아에 대한 성추행, 향문 성교, 금품갈취나 집단 폭행과 같은 학교 폭력을 병행한 형태의 성폭력, 본드와 같은 약물 중독 상태에서의 윤간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년기나 초등생 가해자의 성폭행 역시 아래의 사례와 같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때로는 장기간 지속되거나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를 집중 가해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것임을 보여준다.

<사례 3-53> 10세 남아가 8세 여아를 추행하여 처녀막이 손상되었다. 가해자 부모가 애들이 어려서 한 장난인데 그러냐고 비난하여 경찰에 고소했으나 가해자가 어린이라고 고소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

<사례 3-54> 미술학원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2-3개월 정도 추행을 당하였다. 주로 만진 애가 2, 3명이었다. 상처가 크게 나서 아이를 달래서 보니 귀두가 찢어져 있었다. 상처가 난 날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선생님에게 구조요청을 했으나 모른 척 했다고 하여 교사들에게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각한 심리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사례 3-55> 만 4세인 유아가 중1, 초6, 초5, 초2 아이들로부터 성추행피해를 당하였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중1 아이는 보호관찰처분만 받고, 나머지 아이들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례 3-56> 유치원에서 7살 짜리 남자아이 3명이 6세 여아에게 키스하라고 시키고 속옷을 벗겨 성기를 보았다. 울면서 저항하자 가슴을 누르고, 입을 막고, 발로 얼굴을 밟았다. 그리고 장난감 집에 아이를 가두어놓고 때리고 꼬집었다.

장애인, 노인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역시 청소년 성폭력 못지않게 심각한 양상을 드러낸다. 노인은 유아, 어린이, 장애인,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자로 주목된다. 노인 가해자는 폭행, 위협보다는 용돈, 금품제공, 회유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행하는 경향이 있다.

<사례 3-57> 피해자가 자취하고 있는 집에 옆집 남자가 침입하여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하였다. 가해자를 구속했으나 경찰이 가해자가 정신이상자라고 하며 합의를 권유하였다.

<사례 3-58> 82세 동네 노인이 저능아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여 고소하였다. 2심에서 실형 10개월이 선고되었음에도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사례 3-59> 67세 집주인이 상습적으로 세 들어 사는 5세 여아를 추행하였다. 1심에서 2년이 선고되었으나 지병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하였다.

<사례 3-60> 63세 문방구 주인이 남아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여 고소하였는데,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기를 조르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동네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이사를 하였다. 1심 재판에서 가해자가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8개월 실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문제는 이와 같이 심각한 양상의 성폭력이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이유

로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처벌을 할 수 없더라도 이러한 양상의 성폭력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동일 피해자나 다른 피해자에게로 성폭행이 확대 재생산되거나(사례 3-61, 62), 정신과 진료를 받고 가해자를 피해 전학을 가야 하는(사례 3-60)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례 3-61> 동네 30대 남자가 성추행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가 가해자가 정신병자라고 하며 풀어주었다. 가해자는 풀려 나온 뒤에 돌아다니며 다시 성폭행을 하고 다녔다.

<사례 3-62> 정신지체 장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임신이 되었다. 가해자가 동네 63세 남자로 밝혀져 구속이 되었고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집행 유예 중 동일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하여 재수사중이다.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에서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피해자 가족이 2차 피해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보인다.

<사례 3-63> 5살 여아가 동네 정신질환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 가해자가 아이들을 자꾸 쫓아다녔으나 경찰은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가해자 부모가 누가 고소했냐고 오히려 길길이 날뛰어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아이에게 해가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노인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 노인의 가족, 자녀 등이 합의를 줄라 합의를 해주고 나면, 가해자의 가족들이 '죄가 없으니 풀려 나왔지'하며 돈을 노리고 고소한 것이라는 비방을 피해자 가족에게 해대어 심적인 고통을 받음은 물론 이를 피해 이사가기도 한다.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의 경우, 대체로 아직 자기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부모들은 피해자를 대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심적 고통을 감수하게 된다. 피해자 부모들은 형사 처벌은 안 되더라도 일단 고소하면 수사에 착수하여 조사과정을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는 처벌이 아니더라도 사회교육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는 가해자에 대한 가족들의 관리를 확실히 약속받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있기를 피해자 가족들은 바란다. 또한 피해자는 가정형편이 열악한 장애인으로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파출소, 경찰서장 재량으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보호시설에 입소 격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바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체계적으로 취해지지 않는 현실 상황에서 가해자 가족의 회피와 무관심, 사과는 커녕 역으로 피해자에게 퍼부어지는 비난, 경제적 보상을 꺼리는 태도, 예전처럼 활보하고 다니는 가해자 등은 피해자를 대신해 성폭력 문제 해결의 뒤처리를 감당해야 하는 가족(대체로 부모)에게는 2차 피해로 경험된다. 즉 피해자 가족들은 억울함과 공포와 같은 심적 고통을 수반하며 때로는 가해자나 그 가족을 피해 이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가해는 법적 처벌이 주어지지 않으며 이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강화되기도 한다. 가족들은 장애인을 돌보는데 지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가해자 가족을 강제로 이사시킬 수가 없으므로 피해자 측에서 이사를 하고 마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편 신원 미상의 가해자 성폭행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다음과 같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사례 3-64> 여대생이 강도강간 피해를 당하고 병원에서 정액을 채취하여 신고하였다. 경찰서에서 오라, 파출소에서 오라, 형사가 만나자라고 하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출두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더 힘들어하였다. 용의자를 잡았다고 오라고하

여 남자 친구와 함께 가니 바로 그 용의자와 대면하게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모른다고 하니 즉석에서 그 용의자를 풀어 주었는데, 그 용의자는 옆집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 후 피해자는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사람과 마주칠까봐 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강도강간의 경우 피해자 신고가 없이 인지 수사하게 될 때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용의자와의 직접 대면은 피하게 하는 등 비밀유지와 신변안전을 보장해 줌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 3.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사례 분석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는 수사과정 2001년 80.6%, 2002년 52.2%, 수사·공판 과정 외 2001년 11.6%, 2002년 21.1%, 공판과정 2001년 7.8%, 2002년 11.7%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표 19>). 약 80~90%의 2차 피해가 수사·공판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공판 단계의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례들을 고소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분류하여 각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 및 2차 피해의 특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이 모두 2차 피해는 아니다. 거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위해 형사사법 과정을 선택한 이상, 피치 못하게 감당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나 이에 기초하는 지원 시스템의 부재에 의해 더욱 가중되기도 하며, 이런 점에서 2차 피해와의 경계가 모호한 점도 있다. 즉 배려와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2차 피해로밖에 볼 수 없는 막중한 고통을 피해자에게 안기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피해자의 어려움과 2차 피해를 구분하되 양자의 모호한 경계, 상호중첩이나



전이성(轉移性) 또한 충분히 감안하면서 피해자의 어려움과 2차 피해 문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표 19>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수사과정	187	80.3	179	67.0
공판과정	18	7.7	31	11.6
수사·공판과정 외	28	12.0	57	21.3
계	233	100	267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1) 경찰수사 과정

여기서는 경찰 수사단계를 고소과정과 고소인 조사과정으로 나누어 그 과정의 어려움 및 2차 피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의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사례분석(<표 20>)에 의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2001년 79.1%, 2002년 77.7%이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경찰수사중, 신고, 고소 단계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 기법이나 조사 환경 등의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0>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찰 수사 단계	신고	45	24.1	45	25.1
	고소	30	16.0	28	15.6
	경찰수사중	73	39.0	66	36.9
경찰 수사 단계	경찰수사중	39	20.9	40	22.3
계		187	100	179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고소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2차 피해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적절하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성폭력으로 고소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가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준다는가, 가해자에게 사실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를 받는다는가하는 경우 고소를 결심하게 되기도 한다. 피해자 스스로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가해자 처벌, 피해에 대한 보상 등 무엇을 요구하려 하는지 분명하지 못한 애매한 상태에서 고소를 하기도 한다.

문제는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을 경우 고소를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가해자에 대한 온당한 응징이 좌절됨으로써 피해자는 성폭력의 고통을 훌훌 털어 버리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성폭력의 고통에서 장기간 헤어날 수 없게

될 때 이것은 중증의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다.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는 법적 정보 및 형사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신의 요구가 현실성 있는지 검토하기보다는 원하는 지원 방법을 찾아 상담소를 순례하다가 여기저기서 취합한 다양한 정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시도를 한다. 많은 경우 고소장 대서, 공증, 녹취록 작성, 진단서 발급, 치료 및 증거 채취의 비용에 대한 우려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사건 처리 절차를 스스로 이끌어 가야한다는 부담감과 여러 관련 기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원 체계의 부재로 고소 의지가 좌절되는 것 역시 2차 피해라 할 수 있다.

2차 피해로 볼 수는 없으나 지원 체계를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 고소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 본인의 112 신고 시 적절한 조치를 못 받음.
- 고소절차를 모를 때나 가해자 신원 미상일 때 신고에서의 어려움.
- 피해유형에 따라 친고죄, 비친고죄의 여부를 달리하는데 여성상담실, 조사계, 여성청소년계, 강력계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여 고소방법과 절차에 미숙함.
- 가해자 영향력 때문에 관할 경찰서로 고소하고 싶지 않음.
- 관할의 문제(피해지역 관할, 가해자 거주지 관할, 피해자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 직접 고소)로 사안이 오감.
- 고소장 작성의 어려움, 증거 확보의 어려움

그 밖에 고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여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정도가 있다.

### 고소인 (피해자) 조사과정에서의 어려움과 2차 피해

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를 선택한 이상 목격자 증언이나 진술서와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증인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물리적, 심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부인이나 화간 또는 무고 주장에 맞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또한 가해자 측의 변호사의 수사 열람 기록으로 피해자의 개인적인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부담 또한 져야 한다. 합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형사사법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물리적, 심적 부담만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러한 어려움 외에도 조사관의 고정 관념적 태도나 가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사법처리 과정과 제도 등으로 인해 부당한 2차 피해를 입는다.

상담에서 드러난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내용을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조사공간의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데서 오는 심적 부담
- 조사관의 성별,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 이해 및 배려가 부족함
- 조사시간의 배려, 장시간 신문, 반복질문, 유도성 질문, 피해자 유책성 질문, 위압적·위협적 질문, 주변 조사관의 참견 및 분위기 조성이 고통스러움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불허, 부모 입회 거부, 조서작성 후 확인 날인과정의 실랑이
- 대질신문에서 위협을 느낌, 야유와 공갈, 수사관의 편파적 비호
- 48시간 이후 불구속수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의 피해자 참여 제외
- 군인이 가해자일 때 헌병대 이송, 군사재판 회부 후의 피해자 측 접근 불편, 부대 관련자의 사건축소, 은폐, 감형으로 인한 피해자의 좌절.
- 정신장애, 정신질환자가 가해자일 때 방면됨으로써 받게 되는 불안, 공포.

- 형사 미성년자가 가해자일 때 고소를 안 받아주거나 불구속 수사
- 경찰의 미온적 태도, 수사 지연과 합의 중용, 수사 지연에 대한 설명의 부재.
- 어린이, 청소년 피해에서 사주했다는 의심을 받는, 피해자 부모의 심적 고통
- 꽃뱀, 합의금 노리는 자로 오해받음.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시 좌절감
- 검찰송치 결과통지서 내용파악의 어려움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형사 절차에서 보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권리, 성폭력 사건의 효과적인 처리 절차나 실무상의 관행 등을 잘 모르고 있다. 이로 인해 선부르게 합의를 보아 이후에 더 이상의 권리 주장이나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기도 하며 역으로 가해자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후의 사법 과정에서 도리어 피해자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설사 피해자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어서 곤란을 겪기도 한다.

## (2) 검찰수사 과정

앞의 <표 20>에 의하면 검찰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2001년 16.7%, 2002년 15.0%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검찰 송치 이후 고소사건의 진행과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 담당 검사가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 옹호 논리로 일관할 경우, 검사를 기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십상이며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검사 기피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한다. 가해자 불기소의 이유도 애를 써서 확인해야 하며 항고, 재항고 시 항고 이유서 작성과 증거 보완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어

려움은 적지 않으나 여기에 더해 피해자는 조사관이나 검사의 성폭력 통념에 기반한 수사 태도로 인해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사건 축소 조작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2차 피해를 경험한다.

- 수사 검사와 검찰청 조사관의 태도(피해자 비난, 고압적, 무시, 합의 중용, 무고의 위협)
- 위압적인 조사실 환경
- 반복 출두, 장시간 조사, 가해자 대면, 거짓말탐지기 강요
- 무고, 명예훼손, 폭행, 간통, 공갈협박 등으로 피 고소 또는 피소 위협
- 수사의 지연
- 기소 후의 출입기자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법적 고통
- 피해자와의 의논이나 어떤 통보도 없이 검사가 피의자를 훈방하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의 심적 좌절.

성범죄 사건의 사법처리 내용도 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렵게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구속되고, 기소되어 재판 과정을 통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아래의 분석에서 보여주듯이 강간 범죄는 가벼운 처벌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7년도와 2002년도의 성 범죄자 기소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성 범죄자 처분 결과 (1997 / 2002)

<단위 : 건, %>

		1997		2002		
기소	구공판	구속	2,807	43.0%	3,211	35.8%
		불구속	345	5.3%	668	7.4%
	구약식		144	2.2%	728	8.1%
	소계		3,296	50.5%	4,607	51.4%
소년부 송치		86	1.3%	281	3.1%	
불기소	기소유예		122	1.9%	288	3.2%
	기소중지		411	6.3%	341	3.8%
	참고인 중지		108	1.7%	96	1.1%
	혐의 없음		501	7.7%	683	7.6%
	죄가 안됨		6	0.1%	20	0.2%
	공소권 없음		2,002	30.6%	2,651	29.6%
	소계		3,150	48.2%	4,079	45.5%
총계		6,532	100.0%	8,969	100.0%	

출처 : 범죄분석

\* 2002년 가정보호 송치 2건

1997년 고소된 성폭력범죄의 검찰 기소율이 50.5%이고 구속 구공판이 43%(기소 중 85.2%)인 점은 성폭력 범죄가 흉악 강력 범죄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건의 30.6%가 공소권 없음으로 나타난 것은 피해자가 법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했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1997년도에 비하여 2002년도의 기소율은 51.4%로 약간 상향되었으나 구속 구공판은 35.8%(기소 중 65.7%)로 줄어든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전체 범죄 기소율이 2000년 50.6%, 2001년 56.3%, 2002년도 58.1%로 상승되고 있는 점, 이중 구속 구공

판 비율이 2000년 4.1%, 2001년 4.0%, 2002년 3.9%로 줄어드는 점으로 보아 구속 적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는 전체적인 추세와 맞물린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반면에 구약식 기소율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어 강간 범죄가 가벼운 처벌로 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소년부 송치가 86건(1.3%)에서 281건(8.1%)으로 증가는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간사건의 경우, 강간을 범죄로 인식하면서도 일반 성관계와 동일시하는 이중적 태도는 형사사법 실무자들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sup>38)</sup>. 특히 친밀도가 높은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의 범죄와는 달리, 가해 일상의 영역에서 감수되어질 만한 것으로까지 여길 만큼 경시하게 된다. 또한 침해된 성적 자유의사라는 것도 사인 간에 문제로 여김에 따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간섭하기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사에 의해 강간죄가 일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낫다는 법적 사고에 이르게 되는 듯 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소에 이르는 비율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기소에 이르러 공판이 진행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유도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 및 항고·재항고, 헌법소원 등이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은 불가능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없이는 이를 실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 (3) 공판 과정

본 연구 대상의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사례분석에 의하면 공판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2001년 7.8%, 2002년 11.7%이다. 공판과정을 1심, 2심, 3심으로 구분해 보면 1심에서 가장 많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2심, 3심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38) 박선미, 앞의 논문, 1989, 295면; 정현미 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09-110면.

<표 22> 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심	16	88.9	25	80.6
2심	2	11.1	4	12.9
3심	.	.	2	6.5
계	18	100	31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1) 공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개괄

피해자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공개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피고인측과의 대면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 가해자의 합의 종용에 시달리기도 하며, 진정서, 탄원서, 의견서 작성 요령 및 제출 시기를 몰라, 피해자 자신을 위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구사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재판에 임하는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2차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 주소와 생년월일을 큰소리로 말하기 등 증인 신변보호가 소홀함, 가해자 퇴정 요구하여도 증인석에 나온 후 의향을 묻고 퇴정시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요청했으나 모가 흥분상태라고 퇴정시킴
- 재판 기록의 열람권이 없어 재판의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없음.
- 재판정 외 대기 장소 부족
-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질문, 비슷한 내용으로 혼돈시키는 반복

질문,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

- 1심 선고 전의 합의시도로 괴롭힘. 합의 시도로 재판 연기 지연
-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달라서 사건파악이 미흡하고, 피고인 변호사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음, 공판검사가 공판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음
- 공판 검사의 성향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 배려가 다르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 법 적용에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미약한 형량이나 공소기각·무죄가 가해자에게 선고되어 이로 인해 봉착하는 당혹감과 절망감
- 법정출석·증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업무 중단으로 수입 감소·경제적 손실
- 불구속 재판 중인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침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2차 피해 유형 중에서 특히 피해자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공판업무 전담검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부적절한 증인신문 및 공판 전담검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서 그 양상이 사회성을 띠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상의 실제에서는 고도로 개인적인 법익에 관한 것으로 다루어지며 그에 따라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공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어를 한다. ① '내가 안 했다'(오인), ② '성폭력은 없었다'(거짓말), ③ '내가 했지만 그녀도 동의했다'(동의), ④ '이 증인은 신뢰도가 낮다'(신용성 없음).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품행, 평판, 이전 직업, 생활방식, 옷차림, 성관계 이력 등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두려움 때문에 이에 답을 하면서 2차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하여 성폭력 범죄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위로받고 지지받거나 진술기회를 보장받기보다는 허위고소, 허위진술의 의심을 받거나 범죄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추궁을 받는다. 박선미<sup>39)</sup>는 강간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신문의 초점을 ① 피해자의 유발, ② 피해자의 반항, ③ 피해자의 고소제기과정, ④ 피해자의 평판, ⑤ 피해자의 성력, ⑥ 피고인의 성기삽입 시 피해자의 경험 등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강간 범죄가 있었는지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꺼리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 1999년에 검찰총장이 내린 지침 등에 의하면 검사의 적극적 이의제기나 재판장의 제지 등으로 부적절한 증인신문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나, 현장에서 지침이나 법규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소송당사자와 지원자들을 통해 많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하게 침해되었음을 드러내야 하는 성폭력 범죄에서는 그 의사 침해를 증명해 줄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필요로 한다. 이 정황증거들(육체적 상처나 찢어진 의복, 반항흔적, 목격자 진술)이 증명력을 확보하도록 제시(형사소송법 제294조)하는 소송상 행위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과의 공방을 통해 형사소송을 형성해 가는 소송상 당사자로서 검사의 역할에 포함된다.

또한 검사는 심리의 대상에 관한 논의가 흐트러질 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법 제296조), 불필요한 변론제한 등의 재판장 소송지휘권에 관하여 그 미비에

39) 박선미, 앞의 논문, 1989.

대한 이의(법 제304조)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공소사실에 관한 명확한 심리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소유지에 관해 수사검사가 피해자와 협력하여 직접 해당사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공판절차 진행시 원고 측의 소송진행은 이른바 '공판업무 전담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40)</sup>. 공판검사는 사건을 수사담당 검사로부터 인계를 받은 후, 공소사실 입증 및 공소유지, 그밖에 공판진행시에 필요한 역할만을 맡게 되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공판관여를 위하여 공판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앞서 준비하는 일은 수사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및 공판카드, 증거목록에 의거하여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자백여부 등을 검토하는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검토하지 못하고 입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sup>41)</sup>.

그 이후에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간의 공판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여, 특히 양형 정황의 입증을 위한 활동으로서 필요한 수사과정상의 정황 증거 자료 수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반대로 피고인측의 정황자료로서 피해자의 책임으로 주장되는 바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하는 실태가 김종구 글에서 적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간 공방이 중요한 성폭력 사건 소송에서,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검사의 법정 활동은 소극적으로 되기 쉽다.

전반적인 검찰개혁 차원에서 수사 및 공판업무수행 인력의 확충이 성폭력 사건 소송의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예상되는 일이다. 검사의 업무량을 줄임으로써 수사과정 상 피해자와의 협력이 시도될 수 있고, 공소유지에 관해 수사검사가 직접 해당사건 공판을 진행할 여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 및 항고·재항고, 헌법소원 등이 있다. 그러나 정작 검사의 공판업무가 미진한 경우에는 특별한 대응 방법이 없고, 무죄가 선고된 경우나 고소의 취하를 종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검사에 의한

40) 김종구, "형사사건처리절차의 현실과 개선방안: 검찰운용을 중심으로",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122면.

41) 조한욱, "공판관여 준비실태와 개선방안", 「검찰세미나자료집 8권」, 법무연수원, 25면.

항소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단순한 민원으로서 진정을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시정의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 3) 상소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피해자에게 상소심에서 가장 큰 2차 피해는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1심(또는 2심) 선고 형량의 감형 및 무죄 선고로 인한 충격이다. 이외에 무죄인 선고가 내려진 경우만 검사가 상소하는 것,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소를 사정해야 하는 힘겨움, 상소심 절차에의 소외감 등을 겪게 된다. 또한 증인으로 재소환시 피고인 변호사와 재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앞서 지적한 문제점이 다시 드러나게 되며, 주소 변경이나 연락 미비 또는 검사의 임의 판단으로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 피해자 변호의 기회를 상실하고 재판부 성향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는 불편함과 2차 피해를 겪게 되기도 한다.

3심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정서 제출 방법이나 유죄 원심 파기 후의 고등법원 재판 대처 방법을 몰라서 애를 먹으며, 또한 진행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서류심사에서 고소인 참여 기회 부족으로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한다. 2심 공판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원심 확정 후 어찌할 수 없음, 허탈과 무력감을 겪는다.

## 제 4 장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 발생의 맥락

국가의 공적 절차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있는 그대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범죄자가 공정한 처벌을 받는 것은, 기존의 사법적 정의구현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피해자 치유라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해자는 피해를 부정하고 애써 은폐함에 따라 그것을 계속하여 반추하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가 고소라는 절차를 성폭력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의 하나로 선택했을 때,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의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근대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피해자 입장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미하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한낱 주변적인 지위에 서서, 증거의 대상이 될 뿐이며 재판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왔다.<sup>42)</sup> 그리고 피해자의 이러한 주변적 위치는 바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한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주변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첫째로는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서 비롯되며, 두번째로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두 개의 주요한 맥락과 이에 따른 2차 피해의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객관성에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탈근대적 사회과학과 여성주의에서 객관성은 이제까지는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없었고 그 체험이 은폐되어 왔던 주변인, 억압받은 사람

42)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 연구』 제3호, 1994, 4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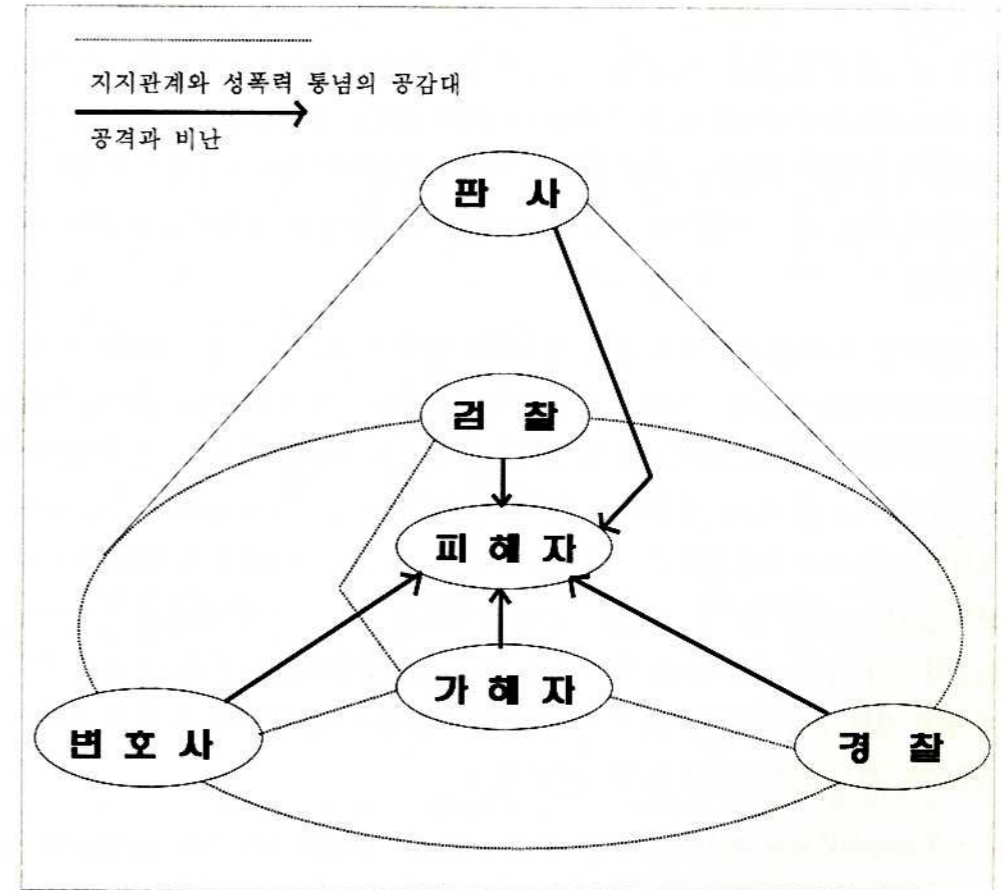
들의 소리를 들리게 하고 그들의 체험을 드러내는 데서 담보된다고 해석된다.<sup>43)</sup> 따라서 2차 피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2차 피해의 당사자들의 체험과 진술은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 즉 피해자들이 실제 고소과정에서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할 때 비로소 2차 피해의 실질적인 축소와 근절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상담에 나타난 사례에 대한 충실한 분석을 통해 2차 피해의 발생 맥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 장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초 작업이 된다.

### 1.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 기인한 2차 피해

성폭력에 대한 수사담당자의 통념은 성폭력 사건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로, 가해자가 보호받는 자로 역전되는 양상을 보여줄 만큼 완고하고 강한 수사담당자의 성차별적 태도로 작용한다. 성폭력에 대한 수사담당자의 통념은 현실의 형사사법처리 과정에서 성폭력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는 거의 절대적 잣대가 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2차 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다. 아래의 그림은 경찰, 검찰, 가해자, 피의자 변호사의 공격에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와 이와 반대로 이들의 두터운 지지 속에 둘러싸여 있는 가해자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피해자 공격과 피의자 지지의 환경 속에서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가 보호받는 피해자가 되는 현실 전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에 의해서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통념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이러한 통념들이 어떻게 2차 피해를 낳게 되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43) M. 푸꼬, 『감사와 처벌』, 오생근(역), 나남 출판, 1994; S. 하딩, 『페미니즘과 과학』, 이재경/박혜경(공)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그림 1>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 속에서 전도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1) 성폭력의 사적 문제화

성폭력에 대한 수사·공판 담당자들에게 뿌리깊게 깔려 있는 성폭력에 대한 기본 통념은 성폭력은 당사자들의 사적 문제라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2000년 경찰청에서 성범죄의 수사점수를 1점에서 3점으로 상향조정 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



죄인 강간의 경우도 2002년도 기소율이 51.4%, 구속 구공판은 35.8%, 1심 판결 집행유예율이 63.5%로 나타났다<sup>44)</sup>. 이것은 수사담당자들이 성폭력을 사적 문제로 보는 통념을 여전히 일반적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여성계는 피해자 인권 보호의 입장에서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며 폭력의 문제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성계의 이러한 주장은 일선 경찰·검찰계에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성폭력은 개인적 영역의 문제이고 수사담당자들로서는 신경쓰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을 사적 문제로 보는 것은 성폭력을 법적 사건화하는 것을 방해한다. 즉 수사담당자들은 성추행, 강간미수는 물론이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해가 수반된 성폭력에 대해서도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당사자들의 문제로 치부한다. 당사자들의 사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아예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지 않거나(사례 4-1, 2, 3, 5), 고소를 하더라도 미온적 수사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결국은 수사를 중단시킨다(사례 4-6, 7). 특히 추행이나 가해자 미상인 경우 수사 담당자들은 거의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사례 4-8, 9). 심지어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조차 가해자가 성폭력을 인정했으면 되었지 굳이 고소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태도를 보인다(사례 4-4).

정조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우세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기대하며 법에 호소를 하나, 아예 고소가 접수되지 않거나 수사관의 비협조로 수사가 제대로 진전되지도 않고 무혐의 처리되거나 중단될 때 피해자는

44)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 301면 참조

계	기소						불기소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소계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공소보류
		구속	불구속											
8,969	4,607	3,211	668	728	281	2	4,079	288	341	96	683	20	2,651	-

수사 담당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당하는 셈이 된다.

<사례 4-1> 초등학교 교사가 수영장에서 남아를 성추행하여 수영장 관리자가 신고한 사례이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몇 차례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시도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1심 재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가해자 측에서 공갈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경찰이 “끈질기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있느냐”, “합의금을 더 올려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게 아니냐” 는 식의 얘기를 하여 의지가 꺾인다고 억울하고 분함을 호소했다.

<사례 4-2> 경찰서에 고소장 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고, 가해자가 출장 가서 없다 하며,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사례 4-3> 동네사람이 어린이를 여러 번 성폭행했다. 이웃 사람들이 가해자의 뒤를 밟아 관리실에서 성추행하는 장면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 정도 큰 구속할 수 없다” 며 풀어주었다.

<사례 4-4> 강간 피해여성이 무료법률상담 받는데 상담변호사가 “월 위해 고소하느냐, 바라는 게 무엇이나” 등 돈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례이다.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자 “가해자가 그 정도 했으면 되었지 그런 것 가지고 고소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가 드러나면 수치스럽지 않겠나?” 고 말했다.

<사례 4-5> 여아의 강간피해사실을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수사 못하겠다, 우리는 살인사건 하나 더 해결하는 게 좋다. 이런 문제로 신경 쓰게 하지 말라, 거짓 진술한 거 아니냐? 무고죄로 잡아넣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 사실을 부인하도록 했다.

<사례 4-6> 피부 관리 여직원이 남자고객으로부터 성추행 당해 남자친구도 사실을 알고 함께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 며 회피하였다.

<사례 4-7> 25세 여성이 같은 직장 영업사원으로부터 음란전화 피해로 고소했으나, 경찰서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를 종용하였다.

<사례 4-8>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신고했는데 4명의 경찰이 바로 왔으나, “미친개에게 물렸다고 생각하라” 고 하며, “남자 친구도 있는데 크게 생각하면 사이만 나빠진다” 고 하였다.

<사례 4-9> 15세 여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가해자를 잡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이틀만에 가해자는 아무 설명없이 풀려났다. 이에 항의 전화를 하자 경미한 사건이고, 가해자의 신원이 분명하고, 가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돌려보냈다고 하였다.

## (2) 피해자 유발론

수사담당자에게서 나타나는 두번째 통념은 ‘성폭력 유발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는 것이다. 이 통념에 따라 이들은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수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어떤 행태가 성폭력을 유발시켰는가를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한다. 바로 여기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전도(顛倒)가 이루어진다. 즉 이러한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저항 여부(사례 4-12, 14), 구조요청 여부, 옷차림과 음주 여부(사례 4-11, 14, 17, 18), 피해자 여성의 부도덕한 행실과 자신을 방어하지 못함에 대한 비난(사례 4-15, 16,

22), 이전의 성력, 직업(사례 4-14), 피해당시의 행위를 폭력적으로 묘사할 것을 강요하는(사례 4-16) 식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 그리고 조사를 빙자한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공격과 비난조의 질문은 다른 수사관과 범죄자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의한 1차 피해 못지 않은 성적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이와 같이 성폭력을 피해자가 유발했다는 통념에 따른 수사관의 피해자 수사 의지는 아래의 사례들(사례 4-10~25)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임신, 낙태를 겪는 등(사례 4-10, 21)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공고하다. 심지어 칼로 위협받으면서 당한 특수강간의 경우와 같이 심각한 성폭력조차도 수사관은 비아냥거리 정도의 사소한 일로 취급하기도 한다(사례 4-25). 또한 피해자 유발론은 성폭력 피해자를 그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못 시킨 결과라는 논리로 이어지면서 피해자 부모에 대한 조롱과 비난, 자식을 잘못 키운 책임 전가로 이어진다. 부모가 술집을 하는 것이 성폭력피해를 유발했음을 지지하는 간접증거로도 채택된다(사례 4-13). 이와 같은 방식으로 2차 피해는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범죄로 인한 고통 이외의 또 다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범죄수사및공판시피해자보호에관한지침’ (1999년)에서는 수사 및 재판담당자의 기본자세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진지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수사 및 공판에 임함으로써 피해자가 모욕이나 조롱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엄정 중립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당사자들로부터 수사 및 공소유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상 유의 사항 중 조사방법에서도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

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해당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경험이나 성범죄를 당할 당시의 기분, 가해자의 사정여부 등 피해자가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하지 않는 질문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삼갈 것
-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노골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을 하지 말 것
-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범행동기를 유발했다는 추궁을 자제할 것

이러한 지침이 1999년도에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2002년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수사 관행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장 수사담당자의 통념은 상부에서 문서로 시달되는 지침 정도로는 변화할 수 없는 뿌리깊고 완고한 의식임을 말해준다.

최근에는 수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이 특별인권교육을 받는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 개인의 또 다른 번거로움과 의지를 요하는 사후 약방문식의 이러한 조처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수사현장의 실태를 점검하여 반영하는 분석 평가를 토대로 인식의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사례 4-10> 17세 여고 2학년생이 채팅으로 알게 된 고교생을 만나러 나가보니 27세의 청년이 친구와 같이 나왔다. 끌려가 한 명에게 강간을 당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15분 후쯤 그 친구가 들어와 강간하였다. 이후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끌고 가 4차례 강간했다. 딸이 낫을 잃고 정신이 나간 듯이 거리를 헤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고소를 한 뒤 학교를 휴학시키고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다. 수사관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변호사에게도 피해자의 학교성적, 용모를 지적하며 불량학생으로 표현하고 무혐의 소견으로 검찰에 송치하

겠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되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완력과 위협에 의한 강간임을 주장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다.

<사례 4-11> 경찰서 강력반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는 중 성행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물어보아 사건과 상관없는 것 같다고 하면 “답하기나 하라”고 했다. 성폭행과 폭행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없는 피해자에게 “술 먹었어? 술 취했냐? 약 먹었냐? 동공이 풀렸네”라고 하고, 가해자를 불러 “약 먹었어? 술 먹었어?”라고 물으니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근데 왜 이리 황설수설해?”라고 했다. 가해자가 반복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별 제재가 없이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피해자에게는 “옷을 벗었어? 벗겼어? 어떻게 벗겼어? 똑바로 말해. 무고죄로 넣겠다”고 소리치며 가해자에게는 “무슨 성폭행이야!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무고죄로 넣으면 돼, 억울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돼, 또 회사에 간 거 본 사람 있지? 그러면 업무방해죄로 넣으면 돼”라고 말했다. 다음날 진술 시 성폭력 피해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고 힘이 없어서 어머니와 동석을 요구했는데 동석하면 진술 못하게 한다고 거절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진술했는데 바로 옆에 어떤 남자가 앉아서 진술하고 있어서 성폭력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봐 수치심을 느꼈다. 조서에 날짜와 시간이 진술한 것과 다르게 써있어 다르다고 하니 이 정도 차이나는 것은 괜찮다고 하였다. 또 전에 진술하러 왔었는데 안 해주셔서 진술거부라고 쓰여 있었다. 전에 진술한 것과 너무 달라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하자 진술서를 다 뽑았는데 수정하라는 거라며 화를 내며 빨리 도장이나 찍고 다음에 또 진술하라고 하며 진술서를 집어던지며 일어서 나가버렸다.

<사례 4-12> 대학 입학 예정인 19세 피해자가 인터넷 동호인 모임에 나갔다가 그 날 알게된 사람(사기 절도죄로 집행유예중임)에게 강간을 당했다. 병원에서 증거채취하고 처녀막 파열, 질 파열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했다. 가해자가 중간에 합의하자는 전화가 여러 차례 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면 합의하고 종결하겠다 하였더니 돈을 노리고 고소한 거라고 주장했다. 처음 조사 받으러 갔을 때는 검사와 계장이 고소장 내용을 보고 이해도 하고 친구를 동석하게도 하는 등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두번째 조사할 때부터는 완전히 냉랭해져서는 선배가 동석하러니까 나가라고 하더니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였다. “차 문 잠겨있으면 열면 되지 바보냐 왜 때리지도 못했냐. 소리치지 못했냐? 네가 원하여 스스로 옷을 벗지 않았냐”고 다그치며 피해자 잘못으로 몰아갔다. 거짓말탐지기를 해보자고 하여 하겠다고 하니 “거짓말탐지기해서 너 거짓말로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하였다. 가족들이랑 스키장에 가다가 갑자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들이랑 어떻게 스키장에 가냐?” 고도 했다. “합의금 그 큰돈을 미성년자가 뭘 할 거냐” 고 하면서 집에서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계속 부모님에게 알리라고 하더니 결국 집에 전화하였다.

<사례 4-13> 대학 졸업 후 입사한지 1주일 만에 회사 사장에게 강간 피해를 입고 경찰서에 고소하고 진단서도 제출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계장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엄마가 술집 경영하는 것을 들추어내며 꽃뱀 취급을 했다.

<사례 4-14> 20대 여성이 아는 사람에게 강간치상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 검찰수사 중 “왜 소리 지르지 않았느냐, 술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라는 식으로 다그쳐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

<사례 4-15> 20대 여성이 친구와 밤늦게 길을 가다 남자 2명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 경찰에 고소했는데 가해자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경찰은 “늦은 시간에 왜 거기에 있었느냐” 고 오히려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사례 4-16> 강간당하고 협박으로 금품갈취까지 당한 30대 여성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대학까지 나온 여자가 자기 방어도 못하고 판단도 못했냐” 고 호통을 치며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례 4-17> 20대 여성이 채팅으로 만난 남자 집에 놀러갔다 술 취한 상태에서 강간당했다. 고소하자 경찰이 “그 집에 간 것은 그런 생각하고 간 거지, 술은 강제로 먹이나 스스로 먹은 거지”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다.

<사례 4-18> 30대 중반 여성이 헬스클럽에서 만난 사람에게 술이 취해 강간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찰이 “강하게 저항을 하지 않았으니 강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례 4-19> 20대 여성이 직장동료가 강간 후 가족에게 알린다며 금품을 갈취하고 구타를 하여 이에 고소를 하자, 경찰 조사시 피해 당시의 행위에 대해 적나라하게 묻고, “답하기나 해라,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

<사례 4-20> 20대 여성이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랑 술을 마셨다. 30분만 자연 깨니까 쉬었다가 바래다주겠다고 하였다. 그냥 좀 쉬자 하더니 덤벼들어 소리 지르고 반항하였으나 강간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고소하자 경찰이 피해자 행실을 비난하였다.

<사례 4-21> 18세 여고생이 강간피해로 임신하여 낙태 후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고 검찰에서 화간이라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하였다. 고소를 취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무고를 검토한다며 부에게, “자기 딸을 책망해야지, 어디 와서 그러느냐” 고 하였다.

<사례 4-22> 20대 여성이 직장동료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은 상대방이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피해자가 불러들였다” 고 하여 상처받았다.

<사례 4-23> 20대 여성이 강간미수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생각이 있었으니 따라간 거 아니었냐, 그 시간대에 남자와 술 먹은 것 보면 그런 여자다” 라고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사례 4-24> 20대 여성이 채팅으로 만난 남자 2인에게 강간과 강간 미수를 당하여 고소하였다. 담당 검사 및 수사관이 “누구랑 몇 번했냐, 성경험이 많다면서, 아무에게나 다리 벌리나, 돈 노리는 것 아닌가” 등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관계를 물어보아 수치심을 주었다.

<사례 4-25> 고3 여학생이 특수강간(칼로 위협) 피해를 당하여 정액을 채취하

고 112로 신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경찰이 “성폭력 이래” 라고 말하며 주위사람과 희희덕거리 심한 모욕감과 함께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

### (3) 가해자 옹호론

‘대부분의 성폭력은 동의된 성관계’ 라는 통념은 바로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 라는 통념으로 이어진다. ‘화간이다’, ‘애인 사이다’ 라는 식으로 피해자와의 친분을 드러내는 피의자의 말 한마디면 수사담당자의 ‘억울한 피의자’ 라는 통념은 진실로 둔갑된다. 심지어 수사담당자는 강간은 젊은 건강한 남자의 애정 표현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강간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설득까지 한다(사례 4-35).

형사소송법은 대부분 피고소인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입장에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의 이러한 특성과 수사담당자의 ‘억울한 피의자’ 라는 통념이 결합되면서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르는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은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일방적인 수사 태도를 견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장시간 반복 질문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지치게 하고, 피해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가해자와 대면시켜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한다(사례4-30, 31, 34, 36~38). 피의자가 입원 등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는 경우, 수사담당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조사하는 과정 없이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조사가 완결되기도 한다.

한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르는 수사담당자들의 편파적 수사는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 수사 태도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강압은 앞의 사례들과 뒤의 사례들에서 일관되게 보여지듯이 무고죄 협박이다.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수사관은 합의에 대한 안내는 해줄 수 있지

만 직접 관여하는 것은 가해자 측과 결탁하거나 그 입장을 비호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수사관에 대하여 불신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이외에 수사담당자들이 피해자를 간통자, 상습적 성매매자나 꽃뱀, 정신병자로 모는 태도도 법률적,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온다(사례 4-28, 29). 이러한 강압적 수사과정은 피해자 스스로 고소를 포기하게 하거나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지고 편파적 수사는 매우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하는 행태로까지 발전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기도 하며, 가해자가 경찰계 종사자이거나 아는 경찰계 인사가 있는 경우, 피의자 부모가 사회 유력 인사인 경우 고소취하가 종용된다. 편파적 수사는 피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진술서 조작이라는 범법적 행태로까지 진전된다. 또한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폐기 처분시킨 뒤에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매우 적극적인 고의성을 갖고 사건을 축소·조작하는 심각한 행태도 관찰된다(사례 4-30, 32~35).

이러한 수사 과정 자체와 강제된 합의 또는 가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감내해야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2차 피해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비호의 의혹과 피해의식을 가중시키고 해당 조사관 뿐 아니라 법체계까지 불신하게 된다.

1999년도 대검찰청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 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은 수사상 유의사항 중 조사방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원조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할 것’, ‘특별한 이유 없이 합의 또는 고소취소를 종용함으로써 특정당사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할 것’, ‘모든 조사와 신문은 분리하여 하고 가해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상황은 위의 분석과 이하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 사실을 청취하는 조사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강압적인 수사를 받고 가해자는 비호받는 듯한 수사·공판 환경이 되고 있을 뿐이다.

<사례 4-26> 고1 여학생이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지하철 입구에 앉아 있다가 모르는 남자에게 여관으로 끌려갔는데 강간을 시도하여 반항하다 뛰쳐나와 112에 신고해서 체포했다. 강간미수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욕박지르고 네가 돈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 진술을 강요하여 겁이 많은 피해자가 도장을 찍고 나와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 어머니가 들어가 보니 진술내용이 피해사실과 달리 적혀있어 항의하니 검사가 “무고죄가 뭘 줄 아냐”라며 자식 잘 기르라고 모욕을 주었다. 가해자가 중간에 합의하자며 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와전되어 검사는 이를 가해자 편에서 주장한대로 돈 뜯어내려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오히려 모욕을 주었다.

<사례 4-27> 상사의 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 3명이 진정하자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다시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을 각 7~8시간 동안 신문한 후 상당부분 조작된 내용을 서명날인 요구했다.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강도상해범을 같은 공간에서 취조하면서 마구 구타하고 욕설을 퍼부었고 “내가 저런 새끼들 잡는 사람ियो, 내 저런 놈 많이 잡았오”라고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이게 무슨 성희롱이냐?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빼 줄게, 계속 버티면 다른 피해자 1과 같이 처벌하겠다. 피해자 1이 하자고 하니깐 그냥 휩쓸려 간 게 아닌가?”라고 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가해자를 옆에 앉혀 놓고는 아니라는 쪽으로 집요하게 이끌어갔다. 조사 말미에는 웃음을 지으며 “강도한테는 피해자가 겁먹었다고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서 “나중에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진술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다. 이러한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로 피해자는 악몽과 불안감으로 장기간 시달렸다. 피해자 2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형사들이 주위를 오가면서 조서를 들여다 보고는 “그건 피해자 2가 잘못했네, 이 사건은 올라가도 진다”는 등등 한 마디씩하며 비웃었고, 피해자 2에게 성희롱의 정의를 묻는 방식으로 수치심이 들게 만들었다. 또한 “500만원씩 배상 받아 여행 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 성희롱이 아니라고 해도 불이익 당하지 않는다, 성희롱이라고 계속 우기면 명예훼손 피진정인에 추가하겠다”고 하며 다른 피해자들과 사이를 이간질하는 언행을 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였다.

<사례 4-28> 20대 여성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화장실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당해 그 자리에서 일행을 붙잡아 신고하였다. 붙잡는 과정에서 잠시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친구는 폭력으로 맞고소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들이 모욕감

을 주었고 형사가 피해자를 꽃뱀이라 몰아세우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괜찮다”고 하며 지장을 찍으라고 권했다.

<사례 4-29> 중학교를 중퇴한 17세 피해자가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어떤 아저씨가 차를 태워준다고 하여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한 후 2만원을 주면서 집에 가라고 하였다. 아이의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알고는 다시 전화가 와서 만났다가 또 강간당했다. 임신 5개월이 되어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고소하였다. 검사가 조사 중 “그전에 성관계 경험 있냐? 성병에 걸린 적이 있냐”는 질문을 하여 심한 수치감을 주었다. 가해자는 태아가 자기애인 줄 어떻게 아느냐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2만원을 주었고 다시 만난 것으로 화간을 주장하며 상습적 청소년 성매매자로 돌아갔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아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자 의사가 검사의 의뢰서를 받아오라고 하였으나 검사는 아직 강간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니 써줄 수 없다고 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낙태의 기회를 놓쳐 출산을 하고 아이를 입양시켰다. 이일로 피해자는 정신과 입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게 되었다.

<사례 4-30> 고시 공부하러 절에 묵은 남자 대학생이 70대 주지가 밤에 성추행하여 고소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관할 경찰서장에게로 데리고 갔다. 가해자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경찰서장이 피해자에게 강압으로 고소를 취하게 하였다.

<사례 4-31>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일주일 후 고소하였다. 월급도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다. 사장은 회사를 퇴사한 것은 업무 미숙이라고 하며 공공유용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둘이서 만나 해결하자고 계속 대화를 하였다. 사장은 2달만에 출두하여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담당형사가 같은 자리에 둘을 앉혀 놓고 성추행을 어떻게 당했는지 설명을 하면 “그런 자세로 그게 가능한가”라며 사장 편을 계속 들어 주며 형사는 “뭐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고소를 계속 지속하고 있냐”며 “더 계속하면 고소인만 더 불리해진다”고 협박하며 자기가 이런 일을 맡게 되면 피곤해지니 합의를 하라고 자꾸 짜증을 내었다.

<사례 4-32> 강간으로 \*\* 남부경찰서에 신고해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다.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oo지청으로 사건이 이관된다는 엽서를 받았다. 가해자는 \*\*거주로 oo지청과는 연관 없었으나 가해자와 절친한 경찰관이 oo에 있어 가해자가 oo으로 거주 주소를 옮기고 그쪽으로 사건을 이관시켜 편파수사로 사건을 옮겼고 갔다.

<사례 4-33>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와 병원에 항의하고, 이어 경찰서 조사과에 병원 원장과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담당형사가 병원 측은 고소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하여 병원 측은 빼고 고소장을 재작성하였다. 경찰에서 피해자를 피고소인 취급하고 정신병자로 몰아 무혐의 처리되었다.

<사례 4-34> 성추행으로 경찰서로 가 신고하여 진술 중 담당 경찰이 시의원인 가해자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는 가해자에게 그냥 나가라고 하였다.

<사례 4-35> 영업전무로 채용한 사람이 40대 여사장을 강간, 폭행했는데 알고 보니 전과 9범이었다. 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경찰고위층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큰소리하자 경찰이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각서를 받아줄 테니 취하하라고 피해자에게 종용하였다.

<사례 4-36> 20대 여성이 강간피해로 고소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을 당했으나, 가해자 아버지가 고위장성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 조사관이 가해자를 비호했다. 특히 검찰 조사관은 노골적으로 가해자 편을 들고 대질심문 끝난 후인데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해자 전화 번호를 성폭력 이후에도 가지고 있었고 가해자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며 “돈보고 고소한 거 아니냐. 가해자는 당신 좋아한다. 건강한 남자가 그러는 거 가능하다” 고 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사례 4-37> 30대 강간 피해여성이 진술시 검찰이 “여자가 해퍼서 그랬다” 고 하면서 대답을 못하게 압박지르는 바람에 주눅 든 피해자는 잘못했다고 하고 나왔다.

<사례 4-38> 여고를 갓 졸업한 여성이 통신으로 만난 사람으로부터 강간 피해로 고소했다. 가해자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가 처음과 달리 태도를 바꾸고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 인줄 아느냐, 넌 어려서 잘 모른다” 라고 하며 합의 종용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라고 협박하였다.

<사례 4-39> 32세 나레이터 모델인데 연예계로 진출하도록 매니저를 해준 사람이 강간 뿐 아니라 포르노 영화도 찍게 하였다. 거부하면 폭행하여 고소했는데 12시간을 조사를 받고 지쳐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경찰 수사 진술 내용이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 (4) 동의된 성관계론

피해자들이 수사공판과정에서 부딪치는 세번째 통념은 성폭력이 아니라 동의된 성관계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수사공판과정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것이 바로 화간으로 몰린다는 점이다. 강간은 현저히 저항을 불능케 할 만한 폭력이 있었는가, 어떻게 저항하였는가를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라든가(사례 4-42, 45, 47, 48), 데이트 관계(사례 4-44, 46, 49), 채팅으로 만난 사람인 경우(사례 4-50) 그리고 폭력과 저항의 표시인 치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된 성관계와의 뚜렷한 구별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관계였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성폭력 이전의 이러한 정황이 성폭력을 무조건 동의된 성관계로 보증해주는 것은 아닌데도, 수사 담당관들의 통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저항이 있었어도 아는 사람에 의한 성관계는 수사관들에 의해 동의된 성관계로 해석된다. 이러한 성폭력의 문제를 동의된 성관계라고 해석하는 통념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피해자화시키지 못하도록 더욱 더 친밀한 관계임을 표명하여 가해자가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뿐 아니라, 성폭력의 문제를 폭력의 문제로 문제화하지 못하고

또 다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하는 사적인 문제로 환원시켜버린다(사례 4-43). 심지어 장기간 감금된 상태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도 상대가 유부남이면 간통으로 해석된다(사례 4-40, 41, 45).

강간 후 도망쳐 나오지 못했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거나 가해자가 자기 차로 피해자를 피해자 집에 내려놓아도 동의한 성관계로 해석된다. 지속적 성폭력은 그 피해가 아무리 막중하더라도 지속성 자체가 동의된 성관계의 증거로 해석된다. 피해자가 스스로 혼란스럽거나 공포감이나 비난받을 걱정으로 고민하느라, 성폭력 사건 시일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신고해도 이 신고의 지연성은 동의된 성관계의 근거로 해석된다.

성폭력은 대체로, 사실상 성폭력이기보다는 화간이라는 수사 담당자들의 통념은 피고소인이 강력히 화간을 주장하는 경우 수사관들이 피해자의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쪽으로 작용하여 합의를 중용하고, 피해자를 무고의 가능성으로 위협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화간을 강간으로 거짓 고소한 자로 몰려,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2차 피해를 당한다.

성폭력 여부를 피해자의 반항정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거의 물리적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수사관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너무 놀라거나 당혹스러워서, 또는 저항을 함으로써 강간범을 화나게 만들거나 실질적인 상해나 죽음의 위협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힘이나 위협이 없는 경우에도 큰 체구의 남자 몸짓에 압도되어 저항하지 못하기도 하고 공포 상태에서는 흥기가 아닌 것을 흥기로 속이는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가기도 한다. 또한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sup>45)</sup>

구조 요청 여부를 성폭력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저항을 기준으로

45) 법무연수원, 「아동 및 취약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증인을 위한 지침」, 2003.

삼는 것과의 마찬가지로의 문제점을 갖는다. 피해자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혹은 너무 놀라거나 창피해서 구조 요청을 못하기 십상이다. 설사 구조 요청을 해도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며 도와준 경우에도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거부한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의 정황은 구조 요청 여부가 성폭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의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여성계에서는 성폭력 판단의 기준이 저항이 아니라 여성의 의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해 오고 있다. 여성의 의사가 판단 기준이 되면, 성폭력 여부는 폭행, 협박의 수단으로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성폭력 판단의 기준을 저항으로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강간 시도에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자기 방어에 소홀한 점에 책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는 피해자의 대응은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 성폭력에 극단적으로 저항하거나 무기력하게 당하는 폭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은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신화라고 지적되는데,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성폭행 피해자와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진짜 강간(real rape)'의 고정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sup>46)</sup>.

그러므로 최근에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을 통하여 간음 행위를 하면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견해<sup>47)</sup>가 학계와 여성계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저항이 반드시 가해자의 성폭력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강하게 저항했을 때, 이것은 성폭력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폭행의 원인을 피해자 여성이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거나 쌍방 폭행죄가 될 뿐 상대 남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46) 법무연수원, 앞의 글, 2003.

47) 박상기, 「형법각론」, 162면.



<사례 4-40> 기혼여성이 형부를 강간으로 고소하자 경찰이 간통으로 취급하고 피해자에게 무안을 주었다.

<사례 4-41>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했는데 증거가 없어 고소가 안 된다고 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유부남이라 간통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다.

<사례 4-42> 20대 여성이 사장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음을 고소하자 경찰이 내연관계로 몰아갔다.

<사례 4-43> 아는 사람에게 강간당하여 경찰에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애인 사이라고 하여 무혐의 처리되었다.

<사례 4-44> 데이트하던 상대가 헤어지려하자 칼을 목에 대고 끌고 가 강간하여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전에 가졌던 성관계를 문제삼아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다.

<사례 4-45> 감금되어 끌려 다니면서 강간, 협박, 폭행당했다. 피해자가 고소했으나 경찰은 반년 정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감금, 강간은 인정이 안 된다고 폭행만 인정하고, 부인이 간통으로 고소할지도 모른다고 위협하였다.

<사례 4-46> 남자 친구에게 여관에 가서 강간당하여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에 송치되었다. 남자친구가 화간을 주장하자 경찰 조사관이 합의를 권유하였다.

<사례 4-47> 남자친구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어 아침에 보니 남자친구의 친구가 옆에 누워있었다.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하자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불리하니 고소를 취하 안 하면 무고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사례 4-48> 30대 여성이 고객의 강간 피해로 고소했는데 검사가 화간이라고 하였다. 검찰청 계장은 “재미는 당신이 보고 왜 여기 와서 그러느냐” 고 하였다.

<사례 4-49> 20대 여성이 헤어진 전 애인이 찾아와 강간미수로 파출소에 신고하였는데 파출소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여 조사 받으면서 피해자가 상기되어 쓰러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피해자가 신경이 날카로운 것이라고 피해자를 탓하고, 검사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고 하였다.

<사례 4-50> 채팅으로 만난 15세 시골여학생 2명을 서울로 올라오게 하여 한 명은 강간, 한 명은 강간미수하여 고소하였다. 가해자도 시인하고 대질신문도 하고 진단서까지 첨부했는데도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잡아 둘 근거가 없다고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게 저항 못했다고 “좋아서 한 것 아니냐” 고 하였다.

## 2.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2차 피해

### (1)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변보호제도의 미흡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 체계를 통해 사건 해결을 하려고 할 때,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 자유, 사생활의 비밀, 신변 보호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피해자에 대한 수사·공판 과정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신변상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볼 때, 피해자의 인격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신변 또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변 안전에 대한 침해는 주로 수사 과정에서 신상 정보 유출과 가해자와의 대질 조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신상 정보 유출은 아래에서 상담사례들이 보여주듯이, 거의 모든 상담 사례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건 기록

을 열람할 수 있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에 의해 고소인의 주소 및 인적 사항이 유출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제 3자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성폭력 피해가 가족, 이웃, 친척, 학원 친구들, 심지어 남편 직장에게까지 알려지는 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고 검찰 출입 기자가 사건을 기사화함으로써 신문에 학교, 동네 이름까지 나가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사례 4-51~64).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는 묵살되고 있다. 특히 피해 내용의 선정적인 보도는 피해자를 매우 광범위하게 사회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주소, 전화 번호 등이 알려짐으로써 합의를 종용받는 부담을 지게도 된다(사례 4-54, 55, 59). 또한 동네 소녀가장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신고인의 신상이 가해자에게 알려짐으로써 신고인이 가해자의 신고 철회의 압력에 시달리게 된다(사례 4-51). 이와 같이 신고인의 신상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제3자의 신고율은 높아질 수 없고 이는 그만큼 취약 계층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피해자가 현저하게 위협을 느끼는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피의자와의 대질 심문 등은 피해자가 신변 위협을 느끼게 되는 또 하나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사례 4-52, 63, 64).

대검찰청은 1999년도에 '수사 및 공판 관여 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막고 신변 보호를 피하고자 했으나, 그 실효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법조문<sup>48)</sup>도 있으나 성폭력특별법 조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피해자 신상 공개만을 제한하고 있고, 피고인과 그 주변인에 의해 피해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방안이 없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의 경우 성폭력특별법 상의 일부범죄만이 이의 적용을 받으므로 단순강간 등의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강력 범죄의 경우

48) 성폭력특별법 제 21조 1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8조.

가해자의 보복조치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가 피의자의 보석 또는 구속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거나 검사나 관할경찰서장이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부범죄만이 적용 대상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단순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도 사례에서 보듯이 신변위협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사례 4-51> 소녀 가장 여아를 동네 사람이 강간한 것을 동네 아주머니가 알게 되어 학교에 알리고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 고발한 사람을 자꾸 불러 너무 괴롭다고 호소하였다.

<사례 4-52> 여학생이 남자 2명에게 윤간을 당하였다. 현장에서 6명이 잡혔는데 3명만 조사받았다. 특수강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데 분리심문도 안하고 같은 책상에서 하는 바람에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사례 4-53> 22세의 여대생은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와 만나러 나갔다가 차안에서 강간을 당하고 곧바로 가해자의 친구가 들어와 강간하려 하여 반항하자 때리고 근처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모텔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도망쳐 경찰서로 가서 고소하였다. 부모가 알게 될까봐 두려워 학교 주소와 핸드폰을 기재하였다. 경찰에 신분을 보장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가해자측 가족이 학교로 수차례 찾아와 합의해 줄 것을 강요하고, "합의 안 해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수사한 형사에게 항의하자 가해자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보고 알아낸 것이라며 도리어 화를 냈다.

<사례 4-54> 등교 길에 동네남자가 성기를 내놓고 자위하곤 하여 동네사람들이 버르다가 잡았다. 경찰서에 넘겨주고 조서도 꾸렸는데 어른 3명, 아이 2명이 대질신문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물었다. 경찰에서는 "길어야 5일정도 구류감인데 이런걸 신고했느냐"고 도리어 죄인취급하고는 3시간 만에 풀어주었다.

<사례 4-55> 27세 남자가 22세 여성을 여관에서 강간미수한 사례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음날 경찰이 불러 경찰서에 가보니 가해자의 부모와 가해자가 함께 계속 합의를 요청하고 애걸하여 힘들게 했다.

<사례 4-56> 14세 여중생을 친부가 지속적으로 강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고소하였다.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진술을 하는데 공개된 수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옆자리에 있는 형사들이 “어떻게 친아버지가 친딸에게 그러겠냐, 이혼 소송에 유리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하면서 수근거리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친부가 범죄를 강력히 부인하여 대질신문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갔는데 그때까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오빠와 여동생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었다.

<사례 4-57> 몸이 안 좋아 낮에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집에 침입한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 경찰에 신고한 후 형사가 2일간 잠복했다가 범인을 잡았다. 용서해달라는 사과의 편지가 와서 경찰에게 왜 주소를 가르쳐 주었냐고 따지니 가해자가 조사할 때 주소를 외운 것이라고 하였다. 신고 당시 경찰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정자가 검출되었다. 절도강간 하루전날 남편과 성관계를 했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경찰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혈액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였다. 피해자 본인에게 상의하여 남편의 동의를 구하게 하는 것이 순서인데 곧장 남편에게 전화한 것이 화가 나 정신적 고통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했더니 담당경찰관계자와 검찰 측을 징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례 4-58> 부인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간피해 입어 고소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어 법원에 주소지변경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전에 살던 집으로 왔다. 더구나 봉투도 없어 제 3자가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이 일로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

<사례 4-59> 학원에 강도가 침입하여 강간미수하고 도주하여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학원생들이 다 있는데 현장 검증을 와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사례 4-60> 구속 구공판 통지서를 현주소지가 아닌 본적지로 보내 온 친척들이 다 알게 되었다. 검찰청에 항의하니 여직원이 실수로 본적지에 보냈다고 항의하자 한번 사과하다가 “이왕 그렇게 된 걸,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나” 고 도리어 화를 냈다.

<사례 4-61>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 20명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와 소동을 부려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었다.

<사례 4-62> 비밀 보장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경찰 송치 중 출입기자가 사건을 취재하여 신문에 학교이름과 동네 이름까지 밝힌 기사가 나갔다.

<사례 4-63> 17세 여학생이 1심에서 피해자 증인 소환 시 비공개신청과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부모와 상담원을 나가라고 하였다.

<사례 4-64> 강간치상 사건의 피해자(외국유학생)가 증언을 하는데 증인석이 피고인석 바로 앞에 있고 통역인이 피고인 옆에 앉게 되었다. 피해자가 증언을 하는 동안 피고인인 가해자가 뒤에서 피해자를 노려보거나 비웃는 소리 등을 내었고, 통역인과 말을 할 때마다 가해자와 눈을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가 매우 큰 심적 부담을 느꼈다.

## (2) 증거확보 지원제도의 미흡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가 많다. 강간의 경우 들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쉽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힘들다. 치상이 없는 강간의 경우 정자 채취, DNA, 효소 검사, 임신, 출산 후 친자확인 등의 방법이 동원되지만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하는 경우 그 또한 성행위의 증거로밖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재판주의가 사법체계의 골격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일단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확보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조속히 의료적 조치를 통하여 신체적 상해를 치료하고 임신, 성병 예방을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위한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하기란, 아래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성폭력피해자 진료에는 다른 환자보다 상황 경청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법정에 출두하게 될 때 환자 진료를 못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또한 의료진이 성폭력 피해자의 진료에 혼란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사례 4-67, 69, 71, 72). 피해자는 진단서 발급이나 법정 증언이 요구되는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의료진들의 기피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가 증거확보의 기회를 놓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다(사례 4-65, 66, 68, 70). 현실적으로 다양한 질환과 상처로 복직이 어려운 종합병원이나 응급실 상황에서 큰 상해가 없는 성폭력피해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시간 대기하기 쉬우며, 비전공자의 처치와 진단서 발급은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 의료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찰 병원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경찰을 동행하지 않는 한,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 피해자로서는 당장은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고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도 증거는 확보해두고 싶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경찰 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원활한 진료와 진단서 발급을 여성부가 지정한 156개의 산부인과 병원과 여성폭력피해지원 긴급의료센터가 7개가 운영 중이지만, 앞에 지적한 이유들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이상적인 의료 체계에서는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접수처리가 되어 응급실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장소나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으로 인도된다. 그리고 모든 의료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가 동의하면, 성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 조치 및 후속조치에 관하여 훈련

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와 (당장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는) 증거 채취, 진단서 발급 등을 담당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체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2차 피해는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65> 10세 남아가 8세 여아를 추행한 사례이다. 산부인과에서 처녀막 손상이라고 하여 고소하려고 진단서를 떼어달라니까 시간이 지났으므로 성폭력을 증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사례 4-66> 탁아방 집 아들이 유아를 추행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발급해달라고 하니 의사가 못해준다고 하였다.

<사례 4-67> 4세 유아가 성추행 피해로 출혈이 있는데 동네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거부하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다.

<사례 4-68> 진료내역서는 써주겠지만 진단서 발급은 안 된다고 하였다. 경찰은 진료내역서는 소용없다고 하였다.

<사례 4-69> 개인병원에서 신고를 안 한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진료를 해주었다. 고소를 원하면 대학병원에 가서 재진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사례 4-70> 3살짜리 여아가 놀이방에 다녀온 후 아래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 4군데나 돌아다녔지만 진단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였다. 아이는 가운 입은 사람만 보면 자지러지고 사지가 경직되었다.

<사례 4-71> 개인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임을 알리자 검사도구가 없고, 법적인 것은 취급을 안 한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라며 진료를 기피했다.

<사례 4-72> 검사기계가 없다고 소변검사만 하고 정자채취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세정제와 약만 주었다.

### (3) 정보권 보장의 미흡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건의 형사 절차 전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의 부당한 공격 내지 책임 전가식 변호에 대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방어하고 형사절차에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한다.<sup>49)</sup> 그리고 이것은 피해자의 정보권이라 명명할 수 있다.<sup>50)</sup> 그러나 아래의 상담 사례들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정보권은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정보권에 대한 제약은 고소 출발 시점부터 발견된다. 피해자는 고소 후 경찰의 추후 통보를 기다려야만 하는데, 이 경우 수 주에서 수개월 심지어 10개월까지 아무 통보를 받고 있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사건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기도 한다(사례 4-76). 그리고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수사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진행 사항을 몰라 피해자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검사는 고소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 공소취소 및 타관송치 등의 처분취지를 고지함으로써(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 또한 피해자는 공소불기소제기처분에 대한 이유를 고지받음으로써(형사소송법 제259조)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알 권리가 충족 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판절차진행단계에 있어 잊혀진 존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이후 공판 기일, 공판 절차의 진행, 공소 취하나 공소장 변경 여부, 재판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피해자는 증인신문에 대한 준비 및 배상명령신청 등 피해자의 현실적인 이익실현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

49) 한입섭, 앞의 글, 45면

50)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66면

다(사례 4-75, 78~81, 84, 85). 검찰은 때로는 고소인이 어리다는 것을 이유로 진행 상황을 알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고소인의 정보권을 무시하기도 한다(사례 4-82).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정보권 제약은 피해자가 수궁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 결과를 낳기도 하며 이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속수무책인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사례 4-77, 85). 예를 들면, 가해자의 기소 사실만 알고 있다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수궁하기 어려운 단기간의 실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사례 4-74). 또는 증인 출석을 통보 받지 못해 피해자가 불참한 가운데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공판이 이루어져 성폭력 사건이 화간으로 둔갑되고 가해자의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사례 4-72, 73).

현행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고지 제도는 검사의 수사종결처분(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절차의 진행과정, 공판기일, 공판 절차의 진행, 공소취하나 공소장 변경 여부, 재판 결과 등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sup>51)</sup>.

<사례 4-72> 음식점을 경영하는 40대 여성을 야간에 침입하여 목을 조르고 강간을 하였는데 잡고 보니 자주 드나들던 손님이었다. 상담소에서 토요법률상담을 받고 법정 동행을 하는 등 지원을 하여 1심 재판에서 4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그 동네가 무서워 이사를 하였다. 2심 재판 중 증인 출석을 받아보지 않아 불참했는데 한참 후에 가해자가 무죄로 풀려 나와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례 4-73> 계부는 십 수 차례 교도소에 들락거린 사람으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목욕을 시키면서 성추행을 하다가 중2때부터 강간을 시작했다. 피해자의 모든 척추장애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해

51)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보고서」, 2003, 61-62면.

계부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다. 참다못해 중3때 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회목사와 복지관에서 피해사실을 알게 되고, 상담소에 의뢰된 후 가해자와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보아 필리핀 유학을 보냈다. 필리핀에 있는 동안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잘 적응하였으나 친모가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해주지 않아 4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위하여 성폭력상담소장이 여성기동대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어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을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피해아동이 필리핀에 있다고 판단하여 통보를 하지 않아 피해아동과 관련자 아무도 증인출석 요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행당한 날짜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친모가 일관되게 계부 편을 들고 있고, 가해자가 당뇨가 있어 발기불능이라며 성폭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례 4-74> 가해자가 징역 8월을 살고 나왔다. 피해자 측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소여부 통지만 받았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실형사실 및 출소사실 등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사례 4-75> 아파트 골목길에서 모르는 남자 2명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고 남편이 바로 신고하여 가해자들이 파출소로 잡혀갔다. 검찰로 넘어간 지 3개월이 되었으나 검사에게 물어볼 때마다 "진척이 없다" 하며 "조사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다.

<사례 4-76> 작년 6월에 전화로 성폭력피해를 신고했으나 올 4월까지 접수도 되어 있지 않았다. 진정서를 써서 냈더니 경찰이 미안하다고 하며 다시 진술하라고 했다.

<사례 4-77> 4, 5세 여아 여러 명이 아파트 공사장 인부들로부터 성추행당해 신고했으나 두 달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연락 없었다.

<사례 4-78> 강제추행으로 파출소에 신고한 후 가해자가 조사받았다. 피해자가 가해자 진술 내용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에 물었으나 "가해자진술은 알려 줄 수

없다" 며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다.

<사례 4-79>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상태에서 자신이 진술한 것을 복사 청했지만 경찰에서 이를 거절했다.

<사례 4-80> 검사에게 재판에 관해 물어 보아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걸 알아서 뭐하겠느냐" 라고 하였다.

<사례 4-81> 공익요원에 의한 강간치상을 고소했는데 군사재판이라고 하며 진행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하였다.

<사례 4-82> 검사가 자주 피해자를 출두할 것을 요구하고 "출두하지 않을 시부모에게 알리겠다" 고 협박하였다. 대질신문도 한다고 해서 너무 힘들며,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어리다며 사건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사례 4-83> 주택가 골목에서 강제 추행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잡아 경찰에 고소하고 가해자도 가해 사실도 시인했지만 형사가 자꾸 합의하라고 하고, 가해자를 풀어주어서 왜 풀어주었는지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고 화를 냈다.

<사례 4-84> 자취하는 학생인데 새벽에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와 강간 시도하여 고소하였으나 가해자가 도주하여 진행이 안 되었다. 경찰서에 문의하면 짜증을 내며 설명해 주지 않았다.

<사례 4-85> 피해자 2명이 가해자 3명을 고소하였는데 그 중 1명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다.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집으로 온 다음 날 경찰서로 전화하니 가해자를 풀어 주었다고 하며 검사가 석방 명령했다고 한다. 나중에 보니 관할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유를 물으니 상부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하였다며 잘 설명해주지 않았다.

#### (4) 부적절한 증인신문

수사·공판 과정에서 성폭력의 잘못된 인식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사생활을 침해한다. 이러한 피해의 유형으로는 수사관의 범죄 사실의 증명과는 무관한 “누구랑 몇 번 했나, 성경험이 많다면, 아무에게나 다리 벌리나, 돈 노리는 것 아닌가” 등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2차 피해를 낳는다. 또한 피해 당시의 자세한 내용까지 질문하는 유형으로 사정 여부라든가 성기 삽입 여부, 강간 피해 당시 쾌감을 느꼈는가의 여부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과정을 지나치게 진술하여야 하는 질문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문과정을 통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부터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시 수사기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공판과정에서의 증인신문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 (5)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적합한 수사·공판 체계의 미흡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중 10대 여성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아 성폭력도 가일층 증가 추세에 있다(<표12>참고). 유아와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은 정신발달상의 심리적 특징이 성인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성인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이 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그 충격이 유아와 청소년에게는 성인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아와 청소년의 일상은 성인의 보호와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며 극심한 스트레스적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에 비해, 성폭력은 이들의 이러한 일상 체험과는 극단적으로 배치되며 때로는 적응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수준의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체험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이 형사사법 절차 속에 들어 오게 될 때, 미성년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의 태도와 수사 환경은 성인 피해자 때보다 훨씬 더 섬세할 필요가 있다. 상담 사례에서 미성년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2차 사례의 실태들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수사담당자들의 미성년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 수사 체계가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나 현실의 수사 체계는 성인 피해자와 범죄자를 다루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된 매우 성인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체계이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여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담 사례를 통해서 미성년의 정신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수사 담당자들의 태도와 그 체계가 어떻게 미성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낳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성년에 적합한 조사·증언 방식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며 여기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미성년의 신체적, 정신적 감당 능력을 벗어나는 반복 진술과 증언, 피의자와의 대질 조사나 증언, 보호자의 동석 없이 이루어지는 조사와 증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첫째로, 경찰·검찰의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 걸쳐 수없이 사건에 대한 반복 진술이 이루어진다. 아이를 몇 시간씩 쉬지도 않고 10여 차례가 넘게 진술하게 하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52)</sup>(사례 4-86, 87, 98). 공판 검사의 교체도 반복 증언의 요인이 되고 있다. 아동은 기억력이 쉽게 감퇴되며 부정적인 기억에 대한 심리적인 방어기제에 의해 반복될수록 앞뒤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반복 진술은 아동에게는 적합한 조사·증언 방식이 못 된다. 더군다나 반복 진술이 강요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은 자폐증, 건물공포증, 대인공포증 등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을 나타

52) 수사·재판 기록서에 나타난 검찰과 경찰의 피해자진술조서는 합하여 대체로 2~4회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9-02」, 1999, 100면 참조), 심한 경우 10회정도의 조사와 증인신문을 받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한다. 피해아동이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은 처음의 성폭력에 버금가는 형사사법 체계의 또 다른 폭력으로 2차 피해가 된다. 이 2차 피해는 단순히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2차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온 가족이 겪는 2차 피해로 확대된다. 이러한 2차 피해과정의 고통에 시달린 가족은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기까지 한다.

둘째로, 피의자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로 미성년 피해자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미성년 피해자 부모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다. 특히 재판 단계에 이르면 이미 미성년 피해자는 이전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몇 차례씩 반복된 조사로 심신이 지쳐 있거나 정신과 치료 중이다(사례 4-87, 93, 94). 보호자는 이런 아동 또는 청소년을 피의자와 대면하는 법정에서 다시 세우는 것이 당사자와 부모 모두에게 참기 어려운 고문으로 경험한다.(사례 4-94) 정신과 치료 중인 피해자는 피의자와 대질하자마자 기절해버리기조차 한다(사례 4-97). 이러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분리신문제도<sup>53)</sup>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sup>54)</sup>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모두 법정증언에만 한정되어 있어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지는 못한다. 또한 법정증언시에도 실무상 분리신문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조항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 53) 형사소송법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 ①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제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도 같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 5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특례)

- ⑤ 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적합한 조사·증언 방식의 예로 보호자의 동석 없이 조사와 증언이 이루어지는 것, 성인 중심적인 조사와 증언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미성년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2차 피해를 초래한다.

미성년 피해자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조차도 위압적인 형사 절차를 견뎌낼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1999년도 대검찰청은 미성년자의 수사·공판시 보호자 동반을 허용하는 피해자 보호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는 증인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퇴정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관찰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사주할 가능성을 이유로 부모를 배제한 채 9세 아동에게 진술을 받거나(사례 4-95), 피고인의 변호인이 8세 피해자의 어머니를 포함한 모두를 퇴정케 하는 요청을 하자 판사는 이를 수용하고 있다(사례 4-96).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성인 중심적 현장 검증이나 어른을 조사하는 식의 어법이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조사, 심신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의 청소년 피해자 조사를 가해자가 군인이라고 헌병대에서 수사하는 조사 방식 등(사례 4-90)으로 미성년 피해자는 조사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없음은 심한 경우 또 한 번의 상처를 입는다.

모욕적인 반복 진술을 감내하는 2차 피해를 겪으면서 성폭력과 관련한 것만을 기억하지 못하는 더 심각한 2차 피해에 빠지는 피해자의 모습, 그리고 부분 기억상실증에 빠진 이 피해자가 성폭력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피의자를 무혐의처리하는 검찰의 모습(사례 4-5)은 경찰·사법계의 2차 피해에 대하여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법계의 증거주의가 극도로 형해화된 증거주의에 빠져 본래의 제 기능을 잃은 모습이기도 하다. 상담 현장 실무자들 그리고 일반인의 상식적인 눈으로는 피해자의 기억상실증만큼 더 이상 분명한 성폭력의 증거는 있을 수가 없다. 피해자는 온 몸으로 성폭력의 증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에 적합한 조사·증언 방식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부재 외에도, 미성년의



정신적·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수사 담당자들의 태도로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미성년자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사례 4-87, 88, 90).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는 불필요한 보강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를 지연시킨다(사례 4-89, 91). 또 한 명도 아닌 초등학교 4, 6학년의 두 명의 가해자의 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동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는다(사례 4-88). 피해 아동이 지목한 피해 날짜에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대면, 그 알리바이의 정확성을 수사하고 반복 조사나 기억력 한계로 인한 아동의 특성을 감안한 보강 수사를 진전시켜야 하나, 가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아동은 자폐 증세로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사례 4-87). 아동에게는 임질균이 발견되나 아동이 가해자로 지목한 별거하는 친부에게 임질균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심한 질타를 한다. 이 경우도 친부가 성병 치료를 완료해서 균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며 아동이 친부와 또 다른 제3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친부에 대한 무혐의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사례 4-86> 내연관계에 있는 30대 여성이 10세 여아를 데리고 사는 중 아이의 친부가 부정기적으로 들렀는데, 아이가 아버지의 성추행을 호소하여 고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10세 여아가 경찰에 의해 수 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추행으로만 알고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으나 강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나중 경찰병원 진료에서 임질균이 발견되어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는데 친부에게서는 임질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가 다른 사람에게 의한 피해를 친부에게 무고하였다며 무고로 넣겠다고 심한 질타를 하였다.

<사례 4-87> 이혼 후 초등학교 2학년 9세 여아와 살고 있는 여성이 공무원시험을 보려고 학원에 다니다가 강사와 사귀게 되고 집에 수시로 드나들게 되었다. 딸에게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여성은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백을 받아 녹음하려고 하던 중 뿌리치고 도망가는 것에 격분하여 문구용 커터 칼로 가해자의 안면에 상처를 내었다. 폭행 치상으로 고소되어 6개월 복역하고 나온 피해자 어머니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9세

여아는 경찰수사, 대질수사, 검찰수사를 되풀이했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피해 날짜를 지목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일 학원 강의를 있었다고 하며 피해자 어머니가 결혼을 요구하다 잘 안 되자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아이의 친부까지 증인으로 소환하여 이혼사유와 피해자 어머니의 성격이상을 진술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났다. 여아는 여러 차례의 진술과정에서 심적 타격을 받고 자폐증 증세를 보이면서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례 4-88> 아이들이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하느라 6학년 언니와 4학년 오빠가 숨어 있다가 나가보니 6세 여아인 피해자에게 어떤 아저씨가 추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쫓아가 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어 왜 그러냐니까 아저씨가 성기를 보이고 아이의 성기도 만졌다고 하였다. 소리 질러 구조를 요청하자 부모들이 쫓아 나왔다. 4학년 오빠와 6학년 언니가 증인으로 나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말을 잘한다, 너무 일치하게 증언한다, 직접 본 게 아니라 전해들은 것 같다”며 “일을 시간인데 먼데서 어떻게 그렇게 또렷이 볼 수 있겠냐, 사주 받은 게 아니냐, 증거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신고를 계속 유예하다가 해가 바뀐 후에 “피해는 인정하나 가해자를 잘못 지목한 것 같다, 가해자로 추정할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 아이들의 판단이 증거로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아 이민을 갔다.

<사례 4-89> 5세 여아 피해자가 “똥꼬가 아프다”며 “괴물이 잠지를 만졌다”고 호소하여 상담소에 상담을 청하여 아동을 면접하는 중 괴물이 유치원 신부를 지칭하는 것을 알게 되어 부모가 고소를 고려하게 되었다. 인형놀이를 통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재현시키는 전 과정을 상담소가 연계한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여형사가 캠퍼더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해사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다른 피해 아동이 3명이나 더 드러나서 정식 고소를 하고 수사를 의뢰하였다. 처음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던 여형사가 태도가 돌변하며 사건 말기를 꺼리며 가해자 거주지 관할서로 넘기라고 하였다. 그럼 왜 거기서 고소하라고 했나 따지니 “조직에 있어봐라, 죄송하다, 종교단체 힘이 얼마나 큰데, 할말이 없다”고 하였다. 캠퍼더 촬영한 테이프를 서류 속에 함께 보내줄 것을 요구했더니 “바쁘는데 어떻게 그 일만 챙길 수 있겠냐”고 화를 내서 “그럼 직접 가지러 가겠다”고 하자 당황하더니 3시간 후에 전화하여 “테이프가 삭제되고 없다”고 하였다.

<사례 4-90> 피해자는(당시 18세)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가해자와 몇 번 정도 전화 통화하는 사이였는데 가해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심심하다고 책을 보내달라고 하여 자신이 보던 책을 보내주었다. 휴가를 나와 책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책이 집에 있다고 유인하여 강간하였다. 가해자가 현역 군인인 관계로 군대 헌병대에서 최초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군대의 특성상 통제되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군인 수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강간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수사를 받았고,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헌병대 수사관은 “처녀막이 있나? 이전에 성경험은 있나? 성행위 자세는? 둘이 좋아서 한 게 아니냐?” 등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였다. 피해자는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다 수사과정에서 받은 모멸감으로 인한 충격이 더하여 집에서 실신하여 쓰러진 이후 성폭행 사건에 관해 부분적인 기억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정상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가 없어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고, 가해자는 당시 주고받은 편지를 제출하고 화관을 주장하였다.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후 피해자는 수영을 하다 코로 물을 들이마시어 실신하는 사고 후에 잃었던 기억을 되찾게 되었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된 상태이고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 중이다.

<사례 4-91> 피해자는(당시 18세)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중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는 학원 선생의 말에 별 생각 없이 그의 승합차에 올랐다. 갑자기 주변의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10만원 줄 테니까 깔끔하게 끝내자. 자꾸 소리 지르면 밖에 내 친구들이 와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 불려서 너를 돌려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강간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를 보다 못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경찰은 가해자를 긴급 체포하였으나 가해자는 새벽 1시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 가해자가 핸드폰을 받은 것을 기억하여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지목한 친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고 같이 술을 마셨다면 휴대폰 통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검사는 피의자를 불구속수사로 석방하였다. 경찰이 보완 수사하여 보고하였으나 검사는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를 상대로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라” 고 했으며, 술집 계산서 내역 등을 조사하는 등 불필요한 조사들로 사건을 지연시켰다. 이후 수사 지휘 검사와는 다른 검사에게 배당되어 송치받은 검사가 철저한 수사 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이번에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불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사지휘 등으로 수사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7개월 이후

에야 기소되어 현재 불구속 재판 진행 중이다.

<사례 4-92> 부모를 따라 영국에 살고 있던 12세 소녀가 방학을 맞아 일시 귀국하여 고모 집에 머물고 있던 중에 고모부에 의하여 강간 및 강제 추행을 당했다. 영국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고모부가 자신에 대해 한 행위를 말했다. 영국 의사에게 진찰 받고 영국 어린이 보호팀의 조사를 받았다. 그 사이 이모가 상담소에 상담을 청하여 외국 거주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소과정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일시 귀국하여 서울 지방경찰청에 고소하여 조사받고 가해자를 구속수사, 검찰에 송치하였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고, 강간치상은 영국에서 조사 자료를 올 때까지 기소 중지인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해자가 영국으로 되 돌아갔음에도 판사는 처음부터 피해 어린이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영국에서는 이미 귀국하여 경찰, 검찰의 조사를 마쳤고 모두 임의성이 인정되는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출국하여 영국에 거주하면서 정신과 전문의와 가족치료 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다시 법정에서 출두시켜 현재 치료되어 가고 있는 6개월 전의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억을 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어린이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이므로 출두할 수 없다는 사유를 설명하고 그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판사는 자신이 직접 이메일로 영국에 출석요구를 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 측 변호사는 증인출석 요구 철회요청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 피해 어린이의 출석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밝혔다. 판사는 4회 공판에서 사법공조를 통해 정식으로 소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에는 6개월이나 걸린다면 6개월 후로 속행 기일을 지정하였다. 이미 가해자측 가족들이 영국까지 찾아와 합의를 강요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판사는 근친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족 내부의 일이므로 가족 간에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가해자가 직접 영국으로 찾아가 피해자측을 설득해 보라하며 구속기간이 4개월이나 남아 있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였다.

<사례 4-93> 불화로 별거상태에 있던 어머니가 시댁에 맡긴 5세 여아가 친부에게서 성추행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5세 여아가 경찰수사, 대질수사, 검찰수사 등 여러 번 출두하게 되어 그 후유증으로 대형 건물 공포증, 대인공포증을 보이게 되었다. 병원 검사에서 임질균이 발견되어 기소되었는데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5세 여아를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하였다.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별도의 안전한 공간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압적인 분위기의 중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되었으나 친부를 퇴정시키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었다. 결국 마약복용 등이 병합되어 2년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재산을 다 빼들려놓아 이혼 위자료도, 아이 양육비도 받을 수가 없었고 아이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아 이를 치료하는 데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소아정신과 치료비가 나왔다.

<사례 4-94> 9세 어린이의 피해자진술시 사주할 수 있다고 부모를 동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례 4-95> 동네 아저씨에 의한 8세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1심에서 3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피해 어린이를 증인으로 소환되어 가해자가 입석한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 가해자 변호사가 피해자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퇴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자, 판사가 아이만 남겨 놓고 모두 퇴정케 하였다. 상당자가 어머니라도 배석케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모두 나가라고 하였다.

<사례 4-96> 차로 끌려가 강간당한 여성 청소년이 정신과 치료 중인데 직접 가해자와 대질시켜 기절했고, 이후에 병세가 악화되었다.

<사례 4-97> 어린이에게 돈을 주면서 성폭행한 것을 피해자 어머니가 알고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이런 걸 다 고소한다”고 비난하면서 아이에게 10번도 넘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 (6)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시 보호제도 미흡

요즘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무고나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다. 물론 성폭력 고소인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은 지금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sup>55)</sup>.

상당 현황에 나타난 사례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측근(남편, 남자친구, 형부, 동생) 또는 피해자를 돕는 지원자가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행, 공갈, 협박, 기물 파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성폭력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면서 피고소인이나 검사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하였다. 대자보 부착, 인터넷 실명 게재 등으로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의 경우 그 행위가 사실이어도 공연히 적시했을 때 피고소인의 입장이 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공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사례 4-98, 99).

역고소 시 성폭력 피해사실 여부가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성폭력 피해자는 실제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받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관련법에 의거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전혀 받을 수 없으며, 피해자 혹은 고소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대부분 강압적인 조사를 받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역고소가 남발되지 않고 피해자가 부당한 역고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sup>56)</sup>.

<사례 4-98> 피해자는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만취하자 편입생인 가해자가 집에 데려다준다고 택시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했다. 이후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실은 관계에 있는 여성과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음을 알게 되어 준강간,

55) 최근에만 해도 도지사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피해자와 그를 도왔던 시민단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방송사 노조간부의 성폭력 사실을 공개했던 피해자와 사회단체 및 그 사실을 보도했던 언론사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부녀회장에 대한 이장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당했고, 대학교수가 조교를 강간한 사건과 또 다른 대학교수의 제자 성희롱 사건에서도 사회단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며, 대학생이 동료 학생을 강간한 사건에서 그 사실을 대자보로 공개한 선배와 여학생회를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박선영, “성폭력사건의 공론화와 명예훼손”, 『법조』, 2003, 7, 48-49면.

56) 박선영 서울대 교수는 “가해자가 그러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나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피해자와 시민단체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피의자가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정황증거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마이뉴스, 2003. 9. 2자 참조.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면서 총여학생회와 여성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로 맞고소해왔으며 가해자의 친구들 명의로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글이 쏟아져 들어왔다. 또한 실명으로 가해사실을 공표한 여성단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사례 4-99> 여고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42세 상사가 폭행하며 강간하였다. 이후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폭행하며 수십 차례 강간하였다. 언니에게 하소연하여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가해자가 사랑한다는 주장이 경찰에 받아들여져 불기소되었다. 다시 가해자가 찾아와 언니와 형부가 가해자를 붙잡다가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눌렀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간이 손상되어 전치 6주의 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형부뿐 아니라 언니까지 폭행으로 고소당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했다.

<사례 4-100> 학원교사의 부가 원생을 화장실에 따라와 성추행하여 고소했으나,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례 4-101> 피해자는 2급 장애인으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취직시켜 준다면 어떤 남자를 소개하였다. 소개받은 남자를 찾아갔더니, 그 남자가 피해자를 강간해 이를 후 고소했으나, 가해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다.

<사례 4-102> 대학 내 성추행 사건을 지원하던 총여학생회장이 대자보 붙인 것으로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50만원 벌금 처분통지서를 받았다.

<사례 4-103> 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한 사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입에 재갈이 물리운 채 지방으로 끌려 다니다가 탈출하여 신고했다. 강간으로 충격을 받아 기억이 혼돈스러워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자 무고죄의 피의자로 심문을 받게 되었다.

<사례 4-104> 미술학원 원장이 5세 여아(만3세)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고 항고하여 고검에서 진행 중인데 학원은 아이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사례 4-105>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세 여학생이 주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의 오빠가 가해자에게 사건의 진의 여부를 따지자 가해자가 자해를 했다. 성추행을 고소했으나, 검찰에서는 도리어 피해자 오빠를 폭력으로 기소했다.

<사례 4-106> 25세 다방종업원이 배달 나갔다가 강간피해를 입어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자, 남자친구와 가해자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가해자의 고발로 피해자와 남자친구는 윤락, 폭행으로 구속되었으며,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강간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례 4-107> 강간으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되고 피해자는 무고죄로 상대방으로부터 맞고소당하고, 경찰은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믿어 주지 않았다.

<사례 4-108> 고시원생이 고시원장으로부터 강간당해 고소했으나, 담당검사가 고시원장과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검사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며 큰소리쳤다. 고시원장이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가 긴급체포되었다.

<사례 4-109> 피해자가 강간, 폭행을 당해 고소하자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했다.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질 심문시키면서 “가해자가 무혐의이며,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라고 말해 강간 피해자를 압박했다.

## (7) 처벌조항 없음 외

(사례 4-110~119)의 경우는 피해자 측이 피해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가해자 측에

의해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사례이다. 성기노출, 엿보기 등 피해에 대하여 처벌조항이 없어 처리하지 못한다는 경찰의 태도에 실망하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성폭력 사건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어 2차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 수반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혼소송, 친권박탈과 호적 분리, 개명소송 등에 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례 4-110> 피해자는 집안이 어려워 12살 때 남의 집 양녀로 들어가 학교도 보내준다고 하고서는 일만 시키고 양아버지의 수발을 들게 했다. 양아버지와 양오빠의 지속적인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15살 때 그 집을 나와 고생하면서 살다가 결혼하였으나 후유증으로 성관계 기피로 남편과 이혼했다. 너무나 억울해 고소를 하고 싶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고 고소가 안 된다고 하였다.

<사례 4-111> 친부가 17세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것을 알게 된 모가 남편을 고소하여 2심에서 7년형이 선고되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수속을 하고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친권 박탈을 했다. 그 동안 남편과 용자를 얻어 형 명의로 사놓은 집을 시댁의 양해를 얻어 팔아 용자 갖고 4자녀를 가르쳤다. 친부가 출소하여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려 아들이 화가 나서 대드는 과정에서 112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이 쌍방폭행이라도 자식이 존속을 폭행하면 중죄라고 하는 이야기에 가해자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집에 찾아와 부인을 목 조르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접근금지명령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막무가내로 찾아와 온 가족이 탈진되곤 한다.

<사례 4-112> 20대 중반의 여직원에게 직장상사가 칼을 들고 위협하여 강간을 했고, 사건 이후 바로 고소하여 1심에서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중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집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끝 쪽에 페이지마다 피해자 가족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둔다든지, 이름 위에 '사형'과 같은 글자를 써서 글을 보내왔다. 나중에 퇴소 후 식구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닌지 너무나 불안했다. 편지를 못 보내게 제한한다든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나 알아보아도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사례 4-113> 24세의 회사원 피해자는 밀린 업무를 하러 일요일에 출근하였다가 건물 경비업체 직원에게 흥기로 위협당하고 강간치상의 피해를 입었다.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한 후 고소하여 구속하였는데 경비업체 소속 변호사로부터 합의 요청에 시달리게 되었다. 가족에게 알리기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모에게 찾아가 합의하겠다고 하다가는 막상 합의를 하려고 하니 가해자가 지불 능력이 없다느니, 재판 결과를 보자고 하며 미루는 등 심적으로 괴로움을 주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에서 2년 실형이 선고되고, 상담소에서 토요법률상담 후 경비업체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다.

<사례 4-114> 모르는 남자가 지하철 여자화장실을 몰래 엿보다가 발각되어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경범죄 외에 정확한 죄명을 모르겠다며 처벌을 외면했다.

<사례 4-115> 옆집 남자가 옷을 벌거벗은 채로 베란다에서 자위를 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고 조치만 하고 끝냈다.

<사례 4-116>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차를 댔는데 자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이상한 방향으로 데리고 갔다.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범으로 잡혔으나, 경찰에서는 감금만 취급하고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례 4-117> 철학관에서 액땀 해준다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해 바로 그 곳을 나와서 경찰에 연락했으나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였다.

<사례 4-118> 가해자가 복역 중, 출소 후에 연락을 해와 접근을 막아달라고 하자 경찰에 요청했으나 처벌 조항이 없다고만 했다.